

2018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목 차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1절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3
제3조 협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	4
제4조 이념과 가치	5
제5조 협조의무	6
제6조 적용범위	6
 제2절 스포츠 윤리와 아마추어리즘	6
제7조 윤리적 행동 원칙	6
제8조 차별금지의 원칙	6
제9조 비윤리적 행위의 금지	6
제10조 아마추어리즘의 유지	7
제11조 아마추어리즘 위반과 대학스포츠 참가 제한	7
제12조 성명 및 초상의 상업적 이용 금지	8
제13조 성명 및 초상의 이용	8
 제3절 협의회 및 대학	8
제14조 협의회의 조직	8
제15조 협의회의 권한과 책임	9
제16조 대학의 권한과 책임	9
제17조 대학경기연맹과의 관계	9
 제4절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	10
제18조 선발절차의 공정성	10
제19조 입시비리 행위의 금지	10
제20조 입시 전 운동능력 측정의 금지	10
제21조 입학전형	10
제22조 학업기준	11
제23조 수업일수와 보충	11
제24조 외국체류 학생선수의 학점이수	11
제25조 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11

제26조 재학 중 프로·실업 진출과 학생선수 자격의 상실	11
제27조 협의회 비승인 대회의 참가 금지 등	12
제28조 운영세칙	12
 제5절 경기운영	12
제29조 대회 및 경기운영 원칙	12
제30조 대회 일정	12
제31조 경기 방식	12
제32조 경기 장소	12
제33조 대회 주최·주관	12
제34조 리그 방식	13
제35조 안전관리	13
제36조 운영세칙	13
 제6절 체육부·운동부의 운영 및 경기지도자의 채용	13
제37조 체육부의 설치 등	13
제38조 경기지도자의 자격	14
제39조 신분보장 및 급여 등	14
제40조 운영경비	15
제41조 합숙소의 설치·운영	15
제42조 학생선수훈련 및 대회 출전 등	15
제43조 경기지도자의 의무 등	15
제44조 경기지도자에 대한 포상	16
제45조 경기지도자 관리지침의 제정	16
 제7절 재정 및 마케팅	16
제46조 재정획보수단	16
제47조 마케팅 사업영역	16
제48조 마케팅 사업권리	17
제49조 후원권의 내용	17
제50조 상품화권의 내용	17
제51조 매체권과 다양한 마케팅 영역	18
제52조 경기장과 스포츠시설에 관한 사업내용	18
제53조 행사참가자 권리의 귀속 및 사용	18
제54조 협력 및 규정준수	19
제55조 마케팅 수익 사용과 배분 원칙	19
제56조 재정의 사용	19

제57조 지원에 대한 요건	19
제58조 협의회의 사전승인과 권리침해금지	20
제59조 운영세칙	20
 제8절 포상 및 징계	20
제60조 일반원칙	20
제61조 상별위원회의 구성	20
제62조 상별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20
제63조 상별위원의 임기	20
제64조 상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1
제65조 표창의 대상	21
제66조 표창의 절차	21
제67조 징계 심의의 대상	21
제68조 징계의 종류	21
제69조 사안의 조사	22
제70조 출석요구	22
제71조 심문과 진술권	23
제72조 징계의 양정	23
제73조 징계의 통보	23
제74조 이의 및 재심사 신청	23
제75조 징계의 효력 발생 시기	23
제76조 징계의 면제 또는 경감	24
제77조 비밀준수의무	24
제78조 징계사유 시효	24
제79조 기록 및 보고	24
제80조 절차에 있어서 통신수단	24
제81조 운영세칙	24
 부 칙	24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35
제2조 정의	35
제3조 대학스포츠 이념·가치의 존중	36

제4조 운영세칙의 효력 및 적용	36
제5조 협의회 규정의 해석	36
제6조 운영세칙의 적용 대상자	37

제2장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

제1절 통칙	38
제7조 대학의 의무와 책임	38
제8조 스포츠윤리 및 아마추어리즘 교육	38
제9조 적용	38
제2절 스포츠윤리의 준수	38
제10조 일반규정	38
제11조 금지되는 도박 관련 행위	39
제12조 금지되는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 행위	39
제13조 금지되는 승부조작·담합 관련 행위	40
제14조 금지되는 도핑 관련 행위	40
제15조 금지되는 스포츠공정 위반 행위	40
제16조 금지되는 학생선수 선발 관련 부정·부당 행위	40
제17조 금지되는 학사관리 관련 부정·부당 행위	42
제3절 아마추어리즘의 유지	42
제18조 일반규정	42
제19조 학생선수 측의 위반행위	42
제20조 대학 측의 위반행위	43
제21조 학생선수 등 성명·초상 등에 관한 권리 소유 및 행사	44
제4절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의 위반	45
제22조 규정 위반	45
제23조 임시처분	46
제24조 신고 및 자인	47

제3장 회원대학과 대학경기연맹

제1절 통칙	47
제25조 대학과 대학경기연맹의 지위	47
제26조 협의회와 대학·대학경기연맹 사이의 통지 등	47
제27조 협의회와 대학·대학경기연맹 사이의 협력 등	47

제2절 대학	48
제28조 대학의 사명과 역할	48
제29조 회원에 대한 경고·자격정지의 효과	48
제30조 회원 탈퇴의 효과	49
제31조 자격 회복	49
제3절 대학경기연맹	49
제32조 대학경기연맹의 사명과 역할	49
제33조 대학경기연맹에 대한 지원 등	50
제34조 대학경기연맹의 협력 등	50
제4장 학생선수 선발(리크루팅 및 입학전형)	
제1절 통칙	51
제35조 대학의 의무와 책임	51
제36조 일반적 규정	51
제37조 협의회 규정 등에 위반한 학생선수 선발의 효력	51
제38조 대학 구성원의 규정 위반 등의 책임	51
제2절 리크루팅	52
제39조 예비학생선수 접촉의 인적 범위	52
제40조 예비학생선수 접촉의 시간적 범위	52
제41조 예비학생선수 접촉의 장소적 범위 및 대면접촉의 횟수	53
제42조 예비학생선수 접촉시 제안사항	53
제43조 예비학생선수에 대한 입시 전 평가	53
제44조 예비학생선수의 입학 전 합숙·훈련참가	54
제45조 예비학생선수의 합숙·훈련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54
제46조 리크루팅 관련 규정 위반	54
제3절 입학전형	54
제47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54
제48조 실기시험	55
제49조 면접시험	56
제50조 기타 특별전형·일반전형 및 학생선수 현황 제출	56
제51조 평가결과 공개 등	57

제5장 학생선수 학사관리

제1절 통칙	57
제52조 학사관리지원센터의 운영	57
제53조 학업기준의 적용	57
제54조 학생선수에 대한 학업기준의 제정·시행 및 학습지원	58
제2절 학사운영	58
제55조 학점취득	58
제56조 수강	58
제57조 시험과 성적	59
제58조 경기·대회 출전 제한	60
제59조 휴학·복학 및 제적·복적과 학생선수 활동	60
제3절 학생선수에 대한 재정지원	61
제60조 학생선수에 대한 재정지원	61
제61조 재정지원 학생선수의 자격 및 지원기간	61
제4절 대회·경기 참가 및 합숙·훈련	62
제62조 단체종목의 학기 중 대회·경기 참가	62
제63조 개인종목의 학기 중 대회·경기 참가	62
제64조 방학 중 대회·경기 참가	62
제65조 훈련 및 휴식 시간	63
제66조 합숙	63
제5절 학생선수의 재학 중 실업·프로 진출	64
제67조 학생선수의 실업·프로 진출	64
제68조 실업·프로 진출과 대학스포츠 참가 자격	64
제69조 실업·프로 진출과 학생자격	64

제6장 대회·경기 운영

제1절 통칙	65
제70조 대회·경기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65
제71조 일반규정	65
제72조 대회·경기 운영 및 시설 안전기준	65
제2절 대회·경기 운영	66
제73조 대회·경기의 방식	66

제74조 대회·경기 시간	66
제75조 대회·경기 장소	66
제76조 대회·경기의 승인 및 취소 등	67
 제3절 안전관리	67
제77조 대회·경기 운영의 안전관리	67
제78조 대회·경기 시설의 안전관리	68
제79조 안전관리 사고 관련 대회·경기의 중단·취소	68

제7장 재정 및 마케팅

제1절 통칙	69
제80조 일반규정	69
 제2절 협의회의 재정	69
제81조 재정 관련 사무의 관리	69
제82조 학생선수·경기지도자에 대한 지원	69
제83조 대학에 대한 지원	69
제84조 대학 운동부의 평가 및 지원	70
제85조 지원의 보류·철회 및 감축	70
 제3절 마케팅	70
제86조 협의회의 마케팅의 통합적 관리	70
제87조 마케팅 사업 및 권리의 위탁 또는 대행	71
제88조 대학 및 학생선수 등의 퍼블리시티권	71
제89조 매복마케팅의 금지	71
제90조 졸업 학생선수에 대한 초상·성명에 관한 권리의 사용	72

제8장 분쟁조정 및 상벌

제1절 통칙	72
제91조 절차의 비공개 및 비밀 유지	72
제92조 대리인	72
 제2절 분쟁조정	73
제93조 분쟁조정위원회 및 중재판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73
제94조 위원장의 임무와 직무대행	73
제95조 위원의 제척 등	73

제96조 분쟁조정위원회 심결 대상	74
제97조 조정의 신청 및 각하 등	74
제98조 심리 절차	75
제99조 화해 권고	75
제100조 심리 종결과 결정	76
제101조 결정의 효력 및 공개	76
 제3절 상벌	76
제102조 상벌위원회의 구성	76
제103조 위원장의 권한과 직무대행	77
제104조 표창의 제한	77
제105조 징계의결 요구 및 조사·수사의 요청	77
제106조 징계절차의 중지	77
제107조 징계 의결의 기한	77
제108조 징계사유의 시효	77
제109조 징계시효의 정지	78
제110조 징계 의결	78
제111조 징계의 공개	78
 제9장 보칙	
제112조 운영세칙의 변경	79
제113조 운영세칙 미규정 사항	79
 부칙	79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KUSF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정 2015. 1. 21.〉

〈개정 2016. 1. 29.〉

〈개정 2017. 7. 25.〉

〈개정 2018. 2. 6.〉

〈개정 2018. 8. 13.〉

제1절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취지에 따라 대학스포츠 학사관리와 경기운영의 정상화 및 선진화를 이루고, 대학스포츠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신장함으로써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13.〉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가운데 협의회의 정관에 의해 회원 자격을 취득한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스포츠”란 대학 재학 학생선수의 협의회 주최·주관 또는 승인 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훈련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학 운동부와 동아리의 교내외 활동을 말한다.
3. “학생선수”란 제1호에 규정된 대학의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에 따라 각 가맹경기단체에 등록한 선수를 말한다.〈개정 2018. 2. 6.〉
4. “예비학생선수”란 장래에 제3호에 규정된 학생선수의 신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체육특기자”란 입학 학생 선발에 있어서 체육에 관한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에 의하여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자격과 조건을 갖춘 학생 선수를 말한다
6. “체육부”란 대학 내에서 체육활동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운동부”란 대학 체육부 내의 부서로서,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로 구성되어 대학스포츠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8. “경기지도자”란 제1호에 규정된 대학의 운동부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으로서,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에 따라 각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하고 이에 해당 대학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6.>

9. “행사참가자”란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운영경비”란 체육부 및 각 운동부의 운영과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등을 말한다.
11. “초상권”이란 행사 참가자의 사진, 성명, 사인(signature), 음성, 만화, 그림, 디지털 이미지 또는 향후 개발될 신기술을 이용한 각종 이미지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12. “후원권”이란 협의회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해 협의회 및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행사와 행사참가자를 활용하여 광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3. “상품화권”이란 협의회 및 행사참가자의 이미지나 초상 등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개작하여 이용하거나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4. “매체권”이란 텔레비전(위성, 케이블, IPTV 포함), 라디오, 인터넷(웹캐스트 포함), 모바일 및 향후 개발될 신기술 등을 통한 모든 형태의 방송 중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15. “상업권자”란 협의회가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협의회의 마케팅 자산 및 지식재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및 단체 등을 말한다.
16. “아마추어리즘”이란 대학스포츠는 교육이 기본 이념이자 우선 가치라는 전제 하에서 대학스포츠를 교육의 연장으로 바라보며, 학생선수의 스포츠 활동은 직업적 활동이 아니며, 학생선수는 프로와 기업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명제에 관한 방침이자 활동을 말한다.
17. “대학경기연맹”이란 당해 스포츠 종목에 관한 대학스포츠 선수 등록 및 경기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 협의회는 대한민국 대학스포츠를 대표하고 관장하는 국내 유일의 사단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설립 취지 및 목적을 두고 있다.

1.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사운영·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조정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선진형 대학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학생선수들이 대학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며, 학생선수들을 전인적 스포츠지도자 및 글로벌 스포츠 인재로 육성한다.
3. 대학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시행하여 우수한 학생선수의 양성과 함께 건전한 대학스포츠 문화를 조성하여 대학교육 목표 달성을 이바지한다.

-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의 대학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대학과 대학경기연맹의 제도와 행정이 대학스포츠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지도·조언하고 조정한다.

제4 조(이념과 가치) 제3조가 규정한 협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대학스포츠가 지향하고 유지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이념을 기본 가치로 하며, 협의회와 대학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데 있어서 대학스포츠의 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향하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관행도 용인하지 않는다.

-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경기지도자·학생선수는 교육 의무를 준수한다.

학생선수의 신분은 선수에 앞서 학생이며, 수학(受學)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스포츠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지향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도 학생선수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인식한다.

- 대학과 경기지도자·학생선수는 대학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스포츠맨십에 입각한다.

대학과 경기지도자·학생선수는 대학스포츠의 주인임을 자각하며 대학스포츠는 공명 정대하게 승부를 겨루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기의 룰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러한 스포츠맨십이 모든 대학스포츠 영역에서 지켜지도록 노력한다.

-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한다.

대학스포츠는 학생선수의 건전한 리더십 함양과 전인적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과 경기지도자·선수는 교육적 가치에 기반한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하며 대학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스포츠에서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 대학스포츠는 다양성과 양성 평등을 중시하며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용인하지 않는다.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보다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학스포츠에 있어서 인격적·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받도록 한다. 양성 평등과 불합리한 차별 금지는 헌법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대학스포츠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성차별도 금지되며 불합리한 차별도 배제된다.

-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장한다.

개인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 보호는 헌법과 교육의 최고 가치이므로 대학스포츠에서도 이는 준수되어야 한다. 대학스포츠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의 인권과 이익이 불합리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세워야 하며 경기지도자와 학생선수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 대학스포츠의 자율성을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건전한 사업은 보장된다.

대학스포츠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율성이 기반되어야 하므로 대학스포츠 조직·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부·프로스포츠 등 외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간섭을 배제한다. 한편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부와의 협조를 유지하고 대학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한다.

제5조(협조의무) 대학은 제3조의 협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과 제4조의 대학스포츠의 이념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학생선수와 경기지도자를 포함한 대학 체육부 및 운동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은 대학 체육부 및 운동부의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③ 이 규정은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 및 사람에 적용된다.
④ 이 규정은 마케팅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2절 스포츠 윤리와 아마추어리즘

제7조(윤리적 행동 원칙) 대학의 경기지도자, 학생선수 그리고 체육부와 운동부 등의 관계자는 대학스포츠가 지녀야 할 아마추어리즘 및 스포츠맨십과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에 관한 윤리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의 원칙) 대학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장애,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비윤리적 행위의 금지) ① 대학의 경기지도자, 학생선수 그리고 체육부와 운동부 등 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 금지행위
 - 가. 스포츠 도박 행위
 - 나. 과도한 훈련이나 체벌, 폭행, 성폭력 및 성희롱행위
 - 다. 승부 조작이나 승부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 라.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복용하게 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하는 모든 위반행위

2. 학생선수 선발 관련 금지행위

- 가. 예비학생선수의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 나. 수학능력시험이나 검정고시와 관련한 부정행위
- 다. 부당한 재정 지원이나 제공에 관여하는 행위
- 라. 실기시험 성적의 부여나 산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 마. 그 밖에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하는 모든 위반행위

3. 학사관리 관련 금지행위

- 가. 학생선수에게 부당한 학점 부여 또는 고의의 학점 조작행위
- 나. 학생선수의 수업일수 조작행위
- 다. 학생선수의 학업기록 관련 허위정보 제공행위
- 라. 그 밖에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해하는 모든 위반행위

② 협의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74조에 따라 이의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아마추어리즘의 유지) ① 협의회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는 대학스포츠 선수로서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만일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 유무에 관계없이 협의회 또는 대학의 결정에 따라 대학스포츠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에 의해 임명된 체육부장, 운동부장, 경기지도자는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만일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및 대학의 결정에 따라 대학스포츠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아마추어리즘 위반과 대학스포츠 참가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생선수는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협의회 또는 대학의 결정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수로서 협의회에서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1.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운동 능력을 이용한 경우
2. 경기 참가를 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대가를 지급 받거나 이를 위한 제안을 수락한 경우
3. 프로선수 또는 실업선수로 활동하기로 약정한 경우(단, 졸업 전 취업하는 학생선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광고,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성

명이나 초상 사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체육부장, 운동부장, 경기지도자는 아마추어리듬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협의회 또는 대학의 결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1.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학생선수나 운동부를 이용한 경우
 2. 경기 참가를 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이를 위한 제안을 수락한 경우
 3. 학생선수를 프로구단 또는 실업팀 선수로 활동하도록 약정한 경우(단, 졸업 전 취업하는 학생선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대학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학생선수나 운동부를 광고, 미디어에 출연시키거나 학생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사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5. 학생선수 선발에 있어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을 유인하거나 그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학생선수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학생선수 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령 또는 요구한 경우

제12조(성명 및 초상의 상업적 이용 금지) 협의회의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한 학생선수의 성명이나 초상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협의회 및 대학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성명 및 초상의 이용) ① 협의회 및 대학은 대학스포츠 대회, 운영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대학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위하여 학생선수의 성명 또는 초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대학스포츠의 후원권, 상품화권, 매체권, 상업권을 보유한 자도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학생선수의 성명 또는 초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은 협의회 및 대학의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절 협의회 및 대학

제14조(협의회의 조직) ① 회원대학의 총장으로 구성된 총회 및 이사회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협의회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원대학의 체육부 위원장, 대학경기연맹 회장, 전문가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② 협의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분과위원회 및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를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를 둔다.
- ④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 사무처의 각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5조(협의회의 권한과 책임) ① 협의회는 대한민국 대학스포츠를 대표·관장하는 기구로서 대학스포츠의 기본 방침, 대학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 고양, 대학스포츠의 학사관리·운영,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대학스포츠의 경기운영, 대학 체육부·운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 ② 협의회는 위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대학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제 규정과 결정을 따르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대학의 권한과 책임) ① 대학은 협의회 회원으로서 대학 학칙과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 체육부·운동부의 운영을 수행하며, 협의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② 대학은 협의회 소속으로서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 체육부·운동부의 운영 등 대학스포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협의회의 정관·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③ 대학은 소속 체육부·운동부의 관계자 및 학생선수·경기지도자가 대학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협의회 규정을 준수하고 협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7조(대학경기연맹과의 관계) ①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종목별 대학경기연맹과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의회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경기연맹에 대하여는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사업 수익의 배분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대학경기연맹도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책임있는 일원임을 고려하여 대학경기연맹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대학경기연맹의 제도와 행정이 협의회 정책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제4절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

제18조(선발절차의 공정성) 학생선수의 선발은 그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수 선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운영하며, 체육부장·운동부장·경기지도자 등 대학스포츠 관계자가 학생선수 선발에 있어서 협의회 및 대학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

제19조(입시비리 행위의 금지) ① 대학은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을 유인하거나 그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동문·후원 등의 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통하여 예비학생선수나 그 가족, 또는 소속 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하게 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각종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2. 예비학생선수의 끼워넣기식 선발
 3. 기숙사나 단체 합숙용 공용주택과 같은 통상의 제공 범위를 넘어선 주거 등에 대한 무상이용의 제공
 4. 예비학생선수의 학업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지원서비스의 제공
 5. 예비학생선수 소속 학교에 대한 스폰서십 제공
 6. 그밖에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익제공
-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입시비리 행위가 행하여진 대학에 대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며, 제60조 이하에 따른 상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 2. 6. >

제20조(입시 전 운동능력 측정의 금지) 대학은 공개 시험 이전에 대학 안팎의 모든 장소에서 예비학생선수에 대한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캠프나 클리닉을 주최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나 조직이 주최하는 행사가 대학 밖에서 실시되고, 또한 그 행사가 모든 대학에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

제21조(입학전형) ① 체육특기자 입학시험의 전형요소는 수학능력시험성적, 고등학교학생 기록부, 실기시험성적, 면접시험성적, 경기실적점수 등으로 한다. 단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자는 검정고시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대체하고, 그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② 경기실적 점수는 각종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의 경기성적을 대회의 규모나 중요도 등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가점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가 마련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한 객관적·합리

적 기준(표준요강)에 따라, 대학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있어서 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내신성적 등 학업성적을 일정수준이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지원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6.>

제22조(학업기준) 대학은 학생선수의 학업기준에 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침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스포츠의 제도적 환경과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합리적인 학업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일반학생의 학업기준에 근접하도록 한다.

제23조(수업일수와 보충) ① 대학은 학생선수가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여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동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대회시즌에 따른 수업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절 학기 강의를 개설하거나 시즌 후 보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협의회 요청 시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체류 학생선수의 학점이수) ①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연습과 경기에 임해야 하는 학생선수는 휴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학생선수는 소속 대학과 체류지역 대학 간의 양해 아래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① 학생선수는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C⁰ 이상을 취득하여야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② 학생선수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이나 출석 일수의 미달로 유급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부상이나 질병, 가정빈곤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유급된 자는 협의회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수활동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대학은 학생선수의 학기별 성적 현황을 협의회 요청 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하여 동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전 불가 학생선수를 위한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17. 7. 25.>

제26조(재학 중 프로·실업 진출과 학생선수 자격의 상실) 학생선수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학 중 또는 휴학 중에 프로구단이나 실업팀에 스카우트되어 각종목의 협회나 연맹의 소속 선수가 되면 해당 대학의 학생선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도 대학의 일반학생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27조(협의회 비승인 대회의 참가 금지 등) ① 학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은 협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는 소속 운동부 및 학생선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9.>

② 학사관리의 정상화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학은 국제대회·전국체육 대회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학기 중 대회에 소속 운동부 및 학생선수의 참가를 최대한 지양한다. <개정 2016. 1. 29.>

제28조(운영세칙) 학생선수선발 및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해당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절 경기운영

제29조(대회 및 경기운영 원칙) ①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기 중 리그 대회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가 국제대회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학기 외 또는 학기 중 토너먼트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은 훈련, 연습경기, 대회출전 등 경기에 관련된 일정으로 인하여 학생선수로서의 소양과 자질함양에 필요한 학습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대회 및 경기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및 학사관리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대회 일정) 대회 및 경기 일정은 회원대학 상호 간의 학사일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31조(경기 방식)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리그 대회의 경기 방식은 상호방문(홈앤파크)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목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2조(경기 장소) ① 경기 장소는 종목별 대학경기연맹이 승인한 경기장에서 개최하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인된 경기장에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대학경기연맹과 협의하여 별도 지정된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최장소를 변경할 경우, 해당 종목별 리그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33조(대회 주최·주관) 협의회는 리그 대회의 주최자 지위를 갖는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종목 대학경기연맹에게 학기 중 리그 대회의 주관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리그 방식) 학기 중 리그 대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종목별 리그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35조(안전관리) ① 모든 경기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준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해당 종목 대학경기연맹 등 경기 진행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한다.
② 홈팀의 대학은 경기지도자, 학생선수, 경기운영 요원 등 경기 참가자 및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제36조(운영세칙) 그 밖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협의회 경기지원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절 체육부·운동부의 운영 및 경기지도자의 채용

제37조(체육부의 설치 등) ① 대학스포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각 대학에 체육부를 두고, 대학의 장의 자문기구로 체육위원회를 둔다. 단,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체육부가 체육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체육부의 명칭·체육부장(위원장)의 자격 등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 ② 체육부는 체육부장, 각 운동부의 부장, 경기지도자로 구성한다.
- ③ 체육부장은 운동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하고, 각 운동부장 및 경기지도자는 체육부장이 추천하고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 ④ 체육부장, 운동부장 및 경기지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체육부장 : 체육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운동부장 : 체육부장의 보좌 및 각 운동부의 대표 및 운영관장
 3. 감독 : 소속 학생선수의 관리 총괄
 - 가. 학생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나. 학생선수의 훈련계획 수립·시행
 - 다. 학생선수의 학사지도 관리
 - 라.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 마. 학생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학생선수관리 상황의 운동부장 및 체육부장에 보고

4. 코치 : 감독 보좌 및 학생선수의 체력관리·경기지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체육부에 두는 각 운동부 및 경기지도자의 편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의 체육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경기지도자의 자격) ① 대학의 장은 각 운동부의 경기지도자로서 종목별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하는 경기지도자는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및 이에 준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6.>

③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한 경기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2. 6.>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3.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서약에 위반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경우

6. 대학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부나 운동부를 해체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 준한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단, 교수나 외부 기관 파견자가 경기지도자를 겸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기지도자는 체육부장에게 신고하고 체육 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기지도자와의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체육부의 운영 성과

제39조(신분보장 및 급여 등) ① 경기지도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임기가 3년이 되도록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의 장은 경기지도자에 대한 안정적 처우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운영경비) ① 대학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체육부와 각 운동부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체육부 및 각 운동부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받으려면 필요한 경비내역을 산출하여 대학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내역을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부 및 각 운동부의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를 받으면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고받은 집행내역을 검사한다.

제41조(합숙소의 설치·운영) ① 학생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체육부에 선수합숙소를 둘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선수합숙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기숙사의 일부를 선수합숙소로 할 수 있다.

② 선수합숙소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합숙소관리인과 학생선수 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둘 수 있다.

③ 합숙소의 관리인은 학생선수들의 합숙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숙소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합숙은 학생선수의 학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없으며, 대학의 체육부는 합숙소에서 구타행위 그 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방학기간이나 종목별 시즌 종료 후 다음 시즌 개시 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합숙 훈련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42조(학생선수훈련 및 대회 출전 등) ① 체육부 또는 각 운동부 감독은 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체육부장의 승인을 받되, 훈련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학생선수의 학교수업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제1항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학생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육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3조(경기지도자의 의무 등) ① 경기지도자는 건전한 경쟁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생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시키고 학생선수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경기지도자는 계약 시 작성하여 제출한 윤리서약(별지 제2호 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경기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안전관리와 도핑금지 등을 위해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법 및 스포츠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경기지도자에 대한 포상) 대학은 경기지도자로서 학생선수들의 모범이 되고, 학생 선수들을 교육자적 양식과 열정으로 지도하여 우수한 경기성적을 나타내 대학스포츠 와 소속 대학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경기지도자 관리지침의 제정) 대학의 장은 경기지도자의 관리 효율성과 합리성 제 고를 통한 대학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도자 관리지침(별지 제3호 서식)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절 재정 및 마케팅

제46조(재정확보수단) 협의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대학의 회비 <개정 2018. 2. 6.>
2. 정부의 지원금 <개정 2018. 2. 6.>
3. 기부·후원금 <개정 2018. 2. 6.>
4. 사업 활동으로 얻는 수익금 <개정 2018. 2. 6.>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8. 2. 6.>
6. 기타수입 <개정 2018. 2. 6.>

제47조(마케팅 사업영역) ① 협의회는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후원권에 관한 사업
 - 가. 후원권자 유치와 계약 업무
 - 나. 후원권자 제공 권리 및 활용범위 조정업무
2. 상품화권에 관한 사업
 - 가. 상품화권자 유치와 계약 업무

- 나. 상품화권자 제공 권리 및 활용범위 조정업무
 - 3. 매체권(중계방송권을 포함)에 관한 사업
 - 가. 매체권자 유치와 계약 업무
 - 나. 매체권자 사용권 부여 범위에 대한 결정
 - 다. 행사 참가자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업무
 - 라. 경기 및 행사참가자와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의 제작과 판매 등에 관한 업무
 - 4. 경기장과 스포츠시설에 관한 사업
 - 가. 주최 대회의 입장권에 관한 업무
 - 나. 스포츠시설을 활용한 마케팅 업무
 - 다. 경기장 이벤트 및 관련 행사 등의 업무
 - 5. 마케팅자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업
 - 가. 마케팅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업무
 - 나. 마케팅자산의 보호에 관한 업무
 - 다. 마케팅자산의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업무
 - 라. 매복마케팅 근절에 관한 업무
 - 6. 그 밖의 이사회에서 정한 마케팅에 관한 사업
- ② 상업권자는 협의회와의 계약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상업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제48조(마케팅 사업권리) ①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학스포츠 대회 및 행사와 관련한 마케팅 사업의 권리는 협의회의 소유이며, 협의회는 마케팅 사업권을 계약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마케팅 사업권과 관련하여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③ 이 규정은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학스포츠 대회 및 행사의 마케팅에 관하여 협의회, 대학경기연맹, 대학, 행사 참가자, 상업권자, 대회 및 행사 관람자(관중 포함), 그 밖의 협의회의 마케팅 자산의 운용과 관련 있는 사람 및 단체에 적용된다.

제49조(후원권의 내용) ① 협의회는 후원자 또는 후원자의 브랜드를 일반 대중에게 노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후원자는 협의회의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점 후원, 타이틀후원, 용품후원 등의 방식으로 광고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0조(상품화권의 내용) ① 협의회는 협의회 마크나 심볼, 마스코트가 새겨진 다음 각 호 제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통해 제

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 공, 글러브 등 스포츠 용품
2. 모자, 옷, 신발 등의 의류물품
3. 컵, 인형, 텀블러, 엽서 등의 기념품
4. 그 밖의 제1호와 제3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②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마케팅을 통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의 마크나 심볼, 마스코트 및 학생선수의 초상·성명을 활용한 전항 각 호 제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매체권과 다양한 마케팅 영역) ① 협의회는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학스포츠 대회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신문, 출판, 방송(라디오, 위성 및 케이블 TV 등), 인터넷(웹케스트, UCC 등), 모바일(SNS 등) 등의 매체를 통한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및 그 관리를 대행시키는 등 협의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 처분 및 양도 할 수 있다.

제52조(경기장과 스포츠시설에 관한 사업내용) ① 협의회는 스포츠 대회를 주최함에 있어 입장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제3자를 통한 대행

② 협의회는 스포츠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2. 영상을 통한 광고
3. 그 밖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1. 경기시작 전 학생선수의 개인기량 선사
2. 경기 중 치어리딩 퍼포먼스와 대학 대표 음악 밴드의 공연 이벤트
3. 은퇴 OB선수들과 현역선수 간 친선경기
4. 그 밖의 대학스포츠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

제53조(행사참가자 권리의 귀속 및 사용) ① 다음을 이용한 영리활동에 관한 권리는 협의회에 귀속한다.

1. 학생선수와 그 밖의 행사참가자의 초상, 이미지 등
2. 협의회가 지급한 공식복장을 착용한 초상, 이미지 등

3. 경기장면, 연습장면, 인터뷰 장면 등

② 상업권자는 협의회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제1항에 관한 초상이나 장면 등을 각종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

③ 학생선수와 그 밖의 행사 참가자가 협의회의 승인 없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협의회 정관, 상별위원회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4조(협력 및 규정준수) ① 대학은 해당 종목의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의 권리 활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협의회가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협의회 마크, 로고 및 기타문장 등 등록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제55조(마케팅 수익 사용과 배분 원칙) ① 마케팅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수익은 협의회의 재원충당과 회원대학 운동부 운영지원 또는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 운동종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한다.

제56조(재정의 사용) ① 협의회는 조성된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2. 회원대학

3. 각 대학경기연맹

4. 그 밖의 행사참가자 또는 이해관계자

② 협의회는 조성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

2. 대학 운동부의 육성과 발전

3. 학생선수의 장학금, 의료비 등 복지

4. 각종 대회의 참가경비 보조

5. 재해 및 상해에 대한 보험

6. 도핑 테스트 비용

7. 스포츠시설에 대한 제 경비

8. 경기지도자의 복지

9. 그 밖의 협의회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③ 협의회는 연도별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57조(지원에 대한 요건) ① 학생선수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학생선수로서의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개인 및 단체에 관한 재정적 지원범위에 대하여는 징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학생선수 또는 회원 대학의 체육부·운동부 관계자 및 경기지도자가 협의회와 이 규정이 요구하는 아마추어리즘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의회는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제58조(협의회의 사전승인과 권리침해금지)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마케팅에 관한 협의회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사전승인 없이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59조(운영세칙) 대학스포츠운영과 관련한 재정지원 및 마케팅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마케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절 포상 및 징계

제60조(일반원칙) ① 포상 및 징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징계대상자에게는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대상 및 종류 이외에는 징계할 수 없다.

제61조(상별위원회의 구성) 포상 및 징계를 위한 위원회는 협의회 정관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설치된 상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2조(상별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상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상별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한 때
2. 이사회 또는 상별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상별위원의 임기) ① 상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18. 2. 6.>

- ② 상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상별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상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상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조사 및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상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상별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상별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상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상별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해당 상별위원에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상별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5조(표창의 대상) ①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한 학생선수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운영에 공로가 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1. 임원 등으로서 오랜 기간 협의회의 운영에 공헌한 사람
 - 2. 학생선수의 지도, 육성에 공헌한 사람
 - 3. 심판원으로서 오랜 기간에 거쳐 경기 운영에 공헌한 사람
 - 4. 학생선수로서 협의회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공헌한 사람

제66조(표창의 절차) ① 표창 대상자는 상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65조 제1항의 대회의 경기력과 관련한 표창에 대해서는 상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결정된 표창의 시기 및 장소는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67조(징계 심의의 대상) 상별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8. 2. 6.>
- 2.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각종 대회에서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3. 그 밖에 비위 사실이 있다고 상별위원회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8조(징계의 종류) ①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2. 표창취소
 3. 출전정지
- ② 회원대학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표창취소
 3. 제재금
 4. 출전정지
 5. 체육특기자 입학 선발 인원 제한
 6. 회원 자격박탈
- ③ 경기지도자 및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표창취소
 3. 제재금
 4. 출전정지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징계는 병과할 수 있다.
- ⑤ 제재금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재금의 대납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부 기일을 도과한 미납에 대해서는 다른 징계를 병과할 수 있다.
- ⑥ 징계유형별 징계 기준은 상별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⑦ 다른 대학리그 운영규정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별위원회에서 특별히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69조(사안의 조사) ① 상별위원회는 징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앞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위원을 임명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은 조사 결과를 상별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출석요구) ① 상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출석 통지가 상별위원회 개최일 1주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한다.

② 징계대상자의 주소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출석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불출석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진술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 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 ④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 ⑤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71조(심문과 진술권)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대하여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의 양정)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증,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반성의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정하여야 한다.

제73조(징계의 통보) ①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 이유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 재심사 및 이의신청의 기한과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4조(이의 및 재심사 신청) ①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는 이사회에 이의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및 재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의 및 재심사 신청은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의 및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이의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75조(징계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상벌위원회의 징계에 대하여 징계대상자의 이의 및 재심사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76조(징계의 면제 또는 경감) 징계를 받은 사람의 반성 정도가 특별히 뚜렷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이사회는 징계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77조(비밀준수의무) 상벌위원회의 위원 및 이사회의 이사는 징계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8조(징계사유 시효) 징계심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9조(기록 및 보고) ① 상벌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 ② 회의록에 상벌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결과를 기록하며,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③ 상벌위원회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절차에 있어서 통신수단) 이 규정에서 통지나 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을 대신하여 팩스나 전자메일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81조(운영세칙) 상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7조 제2항은 이 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25조는 이 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입학전형 기준은 201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 1. 29.>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대학의 체육부 또는 운동부에서 경기지도자로 활동하는 감독 및 코치는 이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③ (조치의무) 이 규정을 시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대학은 제39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5조 제4항을 통해 마련한 구제방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학년도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입학전형 기준은 대학교육협의회의 기준에 따라 202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 ③ 제63조 제1항의 임기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경기지도자 채용계약서

제1조(계약당사자) ○○대학교 총장 “갑”과 경기지도자(체육감독, 체육코치)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갑: ○○대학교 총장 0 ○○○

을: 이름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2조(성실의무) “갑”은 “을”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고, “을”은 채용계약에 따라 “갑”的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내용) “을”은 다음과 같이 “갑”이 정하는 내용으로 임하여야 한다.

1. 직무: ○○대학교 체육부 경기지도자(체육감독, 체육코치, 트레이너)

2. 근무 장소: ○○대학교 체육부 훈련장, 기타장소 ()

3. 담당 업무

가. 체육부 훈련지도 및 관리

나. 훈련 시 소속 학생선수 안전지도

다.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지도 관리

라. 경기대회 참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 등

마. 선수합숙소 관리 등

제4조(계약기간) “을”的 계약기간은 201 .부터 201 . 2. 28.까지로 한다.

제5조(근무일)

① 경기지도자의 근무일은 근무하는 대학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② 대학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시합출전, 학동강화훈련, 합숙훈련 등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날짜를 정하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경기지도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에 관한 조례)을 준용하되, “갑”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7조(보수)

① 경기지도자의 보수는 급여와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 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② 월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 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갑”은 “을”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대학의 장은 경기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때
4. 소속 체육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5.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때
6. 체벌, 폭언 등 비교유적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7.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8. 대학의 장의 허가 없이 선수지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직무를 겸했을 때
9. 기타 대학스포츠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10조(재계약)

- ① 근로계약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 ② “갑”은 “을”이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을”的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 채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상기 계약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201 년 OO 월 OO 일

갑

○○대학교 총장 ○○○ 직인
주소:

을

○○대학교 체육부 경기지도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경기지도자 윤리서약서

소 속 :

직 위 :

이 름 :

위 본인은 ○○대학교의 경기지도자로서 ○○대학교의 창학 정신과 교육 목표를 준수하고, 아울러 스포츠를 통한 대학스포츠의 발전과 국가의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학교 징계절차 등 제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윤리강령]

1. 대학교의 정관 및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직위를 남용하여 입시부정 및 체육부 및 각 운동부 활동과 관련하여 학부형을 통한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3. 선수들을 훈련시킴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나 가혹행위(비인격적 대우 및 언어폭력 포함)를 하지 않는다.
4. 선수들이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5. 경기를 전후하여 담합, 도박, 심판매수, 도핑 등 어떠한 부정이나 비위를 범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대학교 총장 귀하

경기지도자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대학스포츠의 활성화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대학스포츠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스포츠 경기지도자의 관리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2. 방침

- (1) 대학스포츠 경기지도자의 구체적인 관리·운영기준은 이 지침에 의한다.
- (2) 대학스포츠 경기지도자는 각 대학의 장이 대학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3) 각 대학에 경기지도자 심사위원회를 두어 채용과 재계약 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징계 및 해임의 기준을 마련한다.
- (4) 「근로계약」은 소속 대학의 장과 경기지도자 간에 체결하되, 표준채용계약서에 의 한다.

3. 경기지도자 심사위원회 구성

- (1) 위원장: 대학의 장
- (2) 부위원장: 체육부장
- (3) 위원: 체육위원회 위원 및 교수 5인

4. 대상자 심사

- (1) 대상: 정기 계약 대상자와 비정기 계약 대상자로 구분한다.
 - 1) 정기계약 대상자 심사
정기계약 대상자는 매년 1월에 심사한다.
 - 2) 비정기 계약 대상자 심사
 - 가) 운동부의 신설로 경기지도자가 필요한 경우
 - 나) 결원(중도퇴직)이 생겼을 경우
 - 다) 신규 채용 시
- (2) 신규 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 1) 신규 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지도자로서의 자질(품성, 인격, 지도력 등)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독, 코치: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2급 이상

다만, 국가 대표선수 경력이나 시·도 대표로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직접 지도하여 전국대회에서 입상(금, 은, 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한다.

2) 결격사유는 일반직공무원 임용 기준을 준용한다.

(3) 재계약 심사 제외 대상

1) 근무에 불성실한 자, 폭력행사 등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2)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할 때에는 재계약의 심사가 제외될 수 있음

(4) 경기지도자 심사위원회 심사절차

1) 경기지도자의 심사는 경기지도자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2)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3) 심사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료를 보존한다.

5. 계약체결

(1)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 정기 계약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다.

(3) 비정기 계약 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그다음 해 2월 말까지(단기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기간 명시) 해당 대학의 장과 계약한다.

6. 해임절차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근무에 불성실한 자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3)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해임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학의 장이 해당 경기지도자에게 1차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해임을 하되, 최종 해임을 하고자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30일 전에 문서로 그 시기와 사유를 경기지도자에게 통지한다.

(3) 해임자에게 퇴직금의 발생사유가 있는 경우 적시에 지급한다.

7. 비치 장부

소속 대학에서는 인사(인사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 및 복무관련 장부(근무 상황부, 훈련계획서, 지도실적카드 등)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8. 복무 및 보수

(1) 복무

- 1) 근무일: 근무학교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단,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시합출전, 합동 강화훈련, 합숙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 2)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되,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 3) 훈련일지 및 훈련계획서 작성: 체육부장에 보고 및 결재

(2) 보수

- 1)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한다.
- 2) 대학의 장은 봉급과 수당 등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그 처우를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임무

(1) 감독

- 1) 학생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2) 학생선수의 훈련계획 수립·시행
- 3) 학생선수의 학사지도의 관리
- 4)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 5) 학생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학생선수관리 상황의 운동부장 및 체육부장에 보고

(2) 코치

- 1) 감독 보좌(감독이 없을 경우에는 코치가 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학생선수의 체력관리 지도·경기지도
- 3) 훈련일지 및 선수 훈련 카드 기록 및 관리

10. 신규 계약 추천 대상자 구비서류

- (1) 자기소개서
- (2) 경기단체장 또는 교수 추천서 1부

- (3) 경기지도자 자격증 1부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5) 이력서 1부
- (6) 주민등록 등(초)본 1부

11. 경기지도자의 채용계약서

- (1) 경기지도자의 근무는 대학의 장과 경기지도자 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의한다.
- (2) 채용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 1) 근로의 내용(직무, 근무 장소, 담당 업무 등)
 - 2) 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
 - 3) 보수, 퇴직금
 - 4) 계약의 해지, 재계약, 책임의 한계

부칙

이 지침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운영세칙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운영세칙

〈제정 2016. 5. 9.〉

〈개정 2016. 12. 8.〉

〈개정 2018. 8.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규율 사항에 관한 요건, 범위, 효과 등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13.〉

제2조(정의)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스포츠 구성원”이라 함은 대학, 대학경기연맹, 학생선수, 경기지도자 등 대학스포츠¹⁾에 참가하거나 참가할 자격을 가진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2. “협의회 규정”이란 협의회의 「운영 규정」, 「운영세칙」 등 협의회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말한다.
3. “아마추어 학생선수”란 대학 재학²⁾ 중인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각 가맹경기단체에 등록한 선수이거나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대학 동아리의 소속 선수를 말한다.
4. “프로 학생선수”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었거나 선수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선수를 말한다.
5. “리크루팅(recruiting)”이란 대학이 예비학생선수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예비학생선수를 관찰하고 입학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접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6. “접촉”이란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예비학생선수 측과 대학 측이 직접적으로 대면·전화상으로 하는 대화 또는 서신·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양측의 의견을 교류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7. “페블리시티권”이란 사람 또는 단체가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 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인격

1) 운영 규정 제2조 2호는 “대학스포츠”를 “대학 재학 학생선수의 협의회 주최·주관 또는 승인 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훈련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학 운동부와 동아리의 교내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스포츠’의 의미는 달리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의미로 한다.

2) 휴학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재학”的 의미는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표지권’이라고도 한다.

8. “매복마케팅”이란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가 유명인·단체나 대회·이벤트에 대한 후원·보증과 같은 관련성을 나타내거나 유명인·단체나 대회·이벤트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표지를 사용하는 광고·홍보 등의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대학스포츠 이념·가치의 존중) ① 대학은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선진화 및 대학스포츠 구성원의 권익 보호라는 협의회 정관 및 운영 규정의 목적과 이념·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운영세칙의 규율 사항을 준수한다.

② 학생선수 및 경기지도자는 대학스포츠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음과 함께 운영 규정과 운영세칙에서 정한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선진화를 위한 규율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도 부담한다.

③ 대학경기연맹 등 대학스포츠 선수 및 대회·경기의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와 개인도 운영 규정과 운영세칙의 규율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위반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다.

제4조(운영세칙의 효력 및 적용) ① 대학스포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세칙은 운영 규정의 세부규정으로서 운영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운영세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협의회 정관과 운영 규정의 목적·이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학스포츠와 관련한 사항의 규율은 운영 규정 및 운영세칙에 의하고 운영 규정과 운영세칙에 규정이 없으면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스포츠와 관련한 것 중 협의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한다.

③ 대학스포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이 대학의 학칙 및 규정보다 앞선 효력을 가지며 운영세칙과 대학의 학칙 및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이 우선한다.

제5조(협의회 규정의 해석) ① 협의회 규정의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에서 그 의미를 정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 법무법인, 변호사 등 법조계에 해석을 의뢰하여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위원회가 의미를 정한다.

② 대학스포츠 구성원은 협의회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협의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요청이 이유가 있고 해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1항에 따라 의미를 정하되, 요청의 대상인 협의회 규정이 요청 당시 징계절차 또는 소송절차 중인 사건의 근거 또는 관련 규정인 경우에는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전2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협의회 규정을 해석하여 그 의미를 정한 경우에 해석을 요청한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³⁾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한 자가 협

의회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⁴⁾에서 이해관계 당사자⁵⁾인 경우에는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해석은 운영 규정 및 운영세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집행위원회의 해석은 대학과 학생선수·경기지도자 등 협의회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제6조(운영세칙의 적용 대상자) ① 운영세칙은 대학뿐 아니라 대학 소속의 교수·임직원과 대학 동문회 등 유관 단체의 임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대학은 소속 교수·임직원과 대학 동문회 등 유관 단체의 임직원에 의하여 운영 규정과 운영세칙에서 정한 사항이 위반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선 위반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관리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대학 소속의 아마추어 및 프로 학생선수(이하 아마추어 및 프로 학생선수를 모두 가리키는 경우엔 통칭하여 ‘학생선수’라 한다)·학부모·지도자도 운영 규정과 운영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③ 운영세칙은 대학경기연맹뿐 아니라 대학경기연맹 소속의 임직원과 심판 등 관련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대학경기연맹 소속의 임직원과 심판 등 관련자에 의하여 운영 규정과 운영세칙에서 정한 사항이 위반된 경우에 협의회는 위반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학경기연맹에 책임 추궁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규정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와 법률관계를 맺거나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체 포함)는 법률관계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운영세칙의 적용을 받는다.

⑤ 협의회 규정은 운영세칙의 적용대상자가 전항들에서 든 자격이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 규정의 적용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은 전항들에서 든 자격이나 지위를 갖게 되는 때로부터 효력을 미친다.⁶⁾

3) 문서,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의미한다.

4) “구체적 사안”이란 협의회 규정이 징계 및 소송절차에서 근거 및 관련 규정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징계대상자 등 협의회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안에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대학, 경기지도자, 선수 등을 말한다.

6) 예를 들면 어느 학생선수가 대학 재학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후 대학을 자퇴하였더라도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그 학생선수가 대학을 재입학하는 때로부터 출전정지의 징계가 적용된다.

제2장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

제1절 통칙

- 제7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① 대학은 학생선수, 경기지도자 등 소속 대학스포츠 구성원이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과 대학 학칙·규정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대학경기연맹과 종목중앙경기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 ② 대학은 학생선수 입학 및 경기지도자 채용 시 별지 제1호의 1 및 2 각 서식의 서약서를 학생선수 및 경기지도자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이를 받아 보관한다.

- 제8조(스포츠윤리 및 아마추어리즘 교육)** ① 대학은 학생선수, 경기지도자 등 소속 대학스포츠 구성원이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교육하고 관리·감독한다.
- ② 대학은 학생선수 및 경기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윤리·아마추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최소 연1회 내·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거나 외부 관련 교육에 참여토록 한다.
- ③ 대학은 학생선수 및 경기지도자에게 반도핑 관련 교육을 재학 중 또는 재임 중에 최소 1회 받을 수 있도록 내·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거나 외부 관련 교육에 참여토록 한다.

- 제9조(적용)** ① 이 장에서 정한 금지 및 준수 사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금지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위반 행위가 대리인 등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대리인 등 제3자의 행위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감경될 뿐이다.
- ② 이 장에서 정한 금지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금지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지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요구하는 행위도 위반으로 본다.

제2절 스포츠윤리의 준수

- 제10조(일반규정)** ① 운영 규정 제7조의 “윤리적 기준”은 다음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각 금지행위에서 정한 세부적인 행위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한 것이다.
- ② 다음에서 예시로 든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츠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대학 입학 등록 전의 예비학생선수·학부모 및 대학 채용 전의 경기지도자가 이 절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학 등록 및 채용 후에 협의회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금지되는 도박 관련 행위) [제9조 제1항 1호 가목7)] ① 모든 유형의 사회적 도박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박에 이용되는 재물을 제공하거나 도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

② 한국마사회법(경마), 경륜·경정법(경륜·경정),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진흥투표권),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 도박 또는 사행행위 관련한 금지행위

③ 국내외 모든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도박에 참여하거나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에 관여하는 행위

제12조(금지되는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 행위)[제9조 제1항 1호 나목] ① 대회·경기 또는 훈련 등 대학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적인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 성적 가해 행위

③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말과 행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불편을 주는 행위

④ 학생선수에게 적정한 휴식 시간 및 기간⁸⁾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하루·주당 훈련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일·비훈련기간 없이 훈련을 하는 경우⁹⁾ 또는 특별한 경우¹⁰⁾가 아님에도 주말 또는 야간에 훈련을 하는 등 학생선수에게 지나치다고 인정될 정도로 하는 훈련

⑤ 가해자가 체벌, 훈육, 훈계 등의 목적 내지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라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7) 운영 규정의 관련 조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8) 이 운영세칙 제65조 2항(각주)에서 종목별 경기규칙에 따른 경기 중 휴식시간(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45분 전반전 후 15분 휴식)이 적정 휴식시간 판단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9) 이 운영세칙 제65조 1항은 하루 4시간, 한 주 20시간을 초과하여 훈련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3항은 1주일에 1일의 휴식일을 정하여 운동부 및 학생선수가 훈련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조 4항은 시즌 종료 후 다음 시즌 개시 전의 기간 또는 1학년도 기간 내에 1개월의 비훈련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운동부 및 학생선수가 휴식, 자기개발, 부상치료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10) 이 운영세칙 제65조 3항은 참가하는 대회·경기가 임박하여 주말 훈련이 필요한 경우를 특별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 제13조(금지되는 승부조작·담합 관련 행위)[제9조 제1항 1호 다목]**
- ① 대회·경기 이전 또는 도중에 대회·경기 결과나 과정을 미리 결정하여 그에 따라 대회·경기 진행에 영향을 끼치게 하려는 명시적·묵시적인 합의
 - ② 상대방과 명시적·묵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회·경기 결과와 진행에 영향을 끼치는 일방적인 불성실 또는 태만한 플레이
 - ③ 대회·경기 이전 또는 도중에 대회·경기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부정한¹¹⁾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행위
 - ④ 대회·경기 이전 또는 도중에 경기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¹²⁾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제14조(금지되는 도핑 관련 행위)[제9조 제1항 1호 라목]**
- 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서 정한 위반행위
 - ② 「한국도핑방지규정」에서 정한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의 소지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조·제공·증개 등을 하는 자와의 거래 또는 접촉 등의 거래 시도
 - ③ 「한국도핑방지규정」 내용의 인지 내지 이해는 대학, 학생선수, 학부모, 경기지도자의 책무이며, 부지 내지 이해 부족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 제15조(금지되는 스포츠공정 위반 행위)[제9조 1항 1호 마목]**
- ① 가명이나 다른 학생선수·경기지도자의 이름으로 대회·경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
 - ② 대회·경기 참가에 관한 자격이나 경기실적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
 - ③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대회·경기 참가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대회·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
 - ④ 기타 위계나 위력 등 사회상식에 어긋나는 수단과 방법으로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 제16조(금지되는 학생선수 선발 관련 부정·부당 행위)[제9조 1항 2호]**
- ① 대입전형 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

11) 경기 상대방으로 하여금 플레이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거나 심판으로 하여금 판정을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려는 목적 내지 의도의 청탁이라면 부정한 청탁이다.

12)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적극적 이익(노무제공, 담보제공, 연대채무의 부담 등)이든 소극적 이익(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 등)이든 묻지 않는다. 이하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는 특별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속하는 행위[가목]

- ② 검정고시, 수학능력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고의적·계획적으로 하는 부정행위¹³⁾ 뿐 아니라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나목]
- ③ 학생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예비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경기지도자에게 재정¹⁴⁾ 을 부당하게¹⁵⁾ 지원·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 또는 재정 마련에 도움을 주는 등 이에 관여하는 행위[다목]
- ④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성적 내지 점수를 부여하거나 산출하는데 있어서 학칙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제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응시케 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6)[라목]}
- ⑤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행위[마목]

-
- 13)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시행 2014.4.1.] [교육부훈령 제81호, 2014.4.1., 폐지제정] 제7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운영세칙에서의 부정행위도 이를 의미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14) ‘재정’ 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장학금, 보조금, 지원금, 교재비, 홍보모델료 등의 명목으로 또는 명칭 불문하고 학생선수 측에게 지급하는 금원.
 2. 학생선수 측에게 학비나 훈련비 등 금전적 납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해주는 것
 3. 스카웃비, 학교발전금 등 여하한 명칭의 예비학생선수 소속 학교(운동부)나 경기지도자에 지급하는 금원
 4. 대출 보증·담보 제공, 대학 또는 대학재단 산하 단체의 임직원 채용 등 기타 금전적 편의 또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5. 기숙사나 단체 학숙용 공용주택과 같은 통상의 제공범위를 넘어선 주거 등에 대한 무상이용의 제공
- 15) ‘부당성’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정한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부당하지 않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1. 회원대학 학칙이나 관련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장학금·보조금의 지급 또는 학비면제의 혜택
 2. 지급 또는 혜택의 대상자는 학생선수이어야 하며 학생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 또는 학생선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친족·후견자가 지급 또는 혜택의 대상자이어야 함.
 3. 지급 또는 혜택 제공의 주체는 대학(장)이어야 하며,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 지급 또는 제공할 수 있음
 4. 회원대학 학칙이나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한도를 준수할 것
 5. 학생선수를 대학 홍보모델로 하는 경우에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여비, 의상비, 숙식비 등 통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
- 16) 실기시험에 관한 학칙과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제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와 실기시험과 관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성적이나 점수의 적정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17조(금지되는 학사관리 관련 부정·부당 행위)[제9조 1항 3호] ① 학점 조작 행위[가목]

1. 학생선수가 학칙에서 정한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시험 없이 학점을 부여하거나 응시하지 않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행위
2. 학칙에서 정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험을 대체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행위
3. 기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학생선수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행위
4. 성적 평가 및 조회 시스템에서 권한 없이 학점을 기재·수정하는 행위

② 수업일수 조작 행위[나목]

1. 학생선수가 학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기록하는 행위
2. 학생선수가 학칙에서 정한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업일수를 준수한 것으로 기록하는 행위
3. 출석부의 기재와 다르게 성적 평가 및 조회 시스템에서 수업일수를 기재하거나 권한 없이 수업일수를 수정하는 행위

③ 학업기록 관련 허위정보 제공행위[다목]

1. 대학 내부 기관 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협의회·대학경기연맹 등 외부 기관·단체에게 학생선수의 학업기록 관련 정보를 기록 및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2. 학생선수·학부모·경기지도자에게 학생선수의 학업기록 관련 정보를 기록 및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④ 기타 학사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하는 행위[라목]

제3절 아마추어리즘의 유지

- ### 제18조(일반규정)
- ①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는 다음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의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세부적인 행위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한 것이다.
 - ② 다음에서 예시로 든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추어리즘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학생선수 측¹⁷⁾의 위반행위)[제11조 1항] ① 대학(장)의 사전승인 없이¹⁸⁾ 대학 내·외부의 개인이나 단체에 학생선수의 운동능력을 이용한 교육, 시범 등의 직접적 방법

17) 학생선수, 학부모, 가족, 그 대리인을 통칭한다. 이하 ‘학생선수 측’의 의미는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18) 학생선수 측은 운동부의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부 담당교수를 통하여 대학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합리적 판단 하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또는 동영상이나 교재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득¹⁹⁾을 수령²⁰⁾하거나 대학 내·외부의 개인이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이벤트·행사의 출연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득을 수령하는 행위[1호]

② 학생선수의 대회·경기²¹⁾ 참가와 관련하여 대학 내·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부당한²²⁾ 대가²³⁾를 직·간접적으로 지급받거나 이에 관한 제안을 수락하는 행위[2호]

③ 대학(장)의 사전 승인 없이,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수락하고 상품·서비스의 판매·홍보와 관련한 광고·추천·보증²⁴⁾ 활동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미디어에 출연 또는 자신의 성명·초상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대가²⁵⁾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수락하고 TV·라디오 등 미디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행위[4호]

④ 학생선수가 대학 재학 중에 프로스포츠 및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팀에서 시행하는 드래프트·트라이아웃에 참가하여 지명을 받고 입단 및 소속등록을 위한 선수계약(가계약을 포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선수 또는 실업선수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계약²⁶⁾을 체결²⁷⁾하는 행위[3호]

⑤ 프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전1항 내지 전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학 측²⁸⁾의 위반행위)[제11조 2항] ① 대학(장)의 사전승인 없이 대학 내·외부의 개인이나 단체에 학생선수의 운동능력을 이용한 교육, 시범 등의 직접적 방법 또는 동영상이나 교재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득을 수령하거나 대학 내·외부의 개인이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이벤트·행사의 출연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

19) ‘금전적 이득’이란 보수, 봉사료 등 명목 여하 불문한 현금 및 상품권, 교환권 기타 유가증권뿐 아니라 물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0) 학생선수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뿐 아니라 친·인척 또는 수령권한을 위임한 제3자가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1) ‘경기’란 공식적인 경기뿐 아니라 ‘평가전’, ‘시범경기’등의 비공식적 경기와 경기 형식의 이벤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의 ‘경기’의 의미는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22) ‘부당성’ 여부는 경기 주최·주관자, 지급의 당사자, 금액이나 가치평가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골프와 같은 프로종목의 국내외 대회·경기 참가 및 초청과 관련하여 주최·주관자가 참가비, 초청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와 아마추어 종목에서 국내외 대회·경기 참가 및 초청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참가비, 초청료, 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당성 여부 입증책임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측에게 있다.

23) ‘대가’는 ‘금전적 이득’을 의미한다. 이하 이 절에서의 ‘대가’의 의미는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24) 학생선수가 장비 사용 및 의류 착용과 관련하여 장비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제품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대학 공식유니폼과 의류를 그대로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 훈련이나 경기에서 상업적 상표 또는 로고가 들어있는 장비·의류를 사용·착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25) ‘대가’에서 미디어 측에서 교통비 또는 거마비 등 명목의 실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6) ‘계약’이란 계약, 약정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두 또는 문서로 프로선수 또는 실업선수 활동을 내용으로 하여 프로팀 또는 실업팀과 체결하는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의 ‘계약’의 의미는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27) ‘체결’은 학생선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학부모·에이전트 등 학생선수가 아닌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학생선수를 대리하거나 학생선수의 목시적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28) 대학 체육부장, 운동부장, 경기지도자 등을 통칭한다. 이하 ‘대학 측’의 의미는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득을 수령하는 행위[1호]

② 학생선수의 대회·경기 참가와 관련하여 대학 내·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부당한²⁹⁾ 대가³⁰⁾를 직·간접적으로 지급받거나 이에 관한 제안을 수락하는 행위[2호]

③ 학생선수가 대학 재학 중에 프로스포츠 및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팀에서 시행하는 드래프트·트라이아웃에 참가하여 지명을 받아 입단 및 소속등록을 위한 선수계약(가계약을 포함)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선수로 하여금 프로선수 또는 실업선수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³¹⁾하는 행위[3호]

④ 대학(장)의 사전 승인 없이,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수락하고 학생선수가 상품·서비스의 판매·홍보와 관련한 광고·추천·보증³²⁾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그 목적으로 광고·미디어에 출연 또는 학생선수의 성명·초상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대가³³⁾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수락하고 학생선수를 TV·라디오 등 미디어 프로그램에 출연케 하는 행위 또는 학생선수 측에게 이를 강요하는 행위[4호]

⑤ 학생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을 유인하거나 입학시킬 목적으로³⁴⁾ 입학 전에 학생선수 측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³⁵⁾, 다른 예비학생선수를 끼워넣기식³⁶⁾으로 선발하는 행위, 예비학생선수가 속한 학교나 학교 운동부의 감독·코치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예비 학생선수를 입학시킬 목적으로 예비학생선수 측이나 그가 속한 학교운동부의 감독·코치 등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예비학생선수의 입학 및 학사관리에 있어서 학칙에 어긋나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5호 및 운영 규정 제19조 1항]

제21조(학생선수 등 성명·초상 등에 관한 권리 소유 및 행사)[제12조 및 제13조] ① 학생 선수의 초상·성명 등의 동일성에 관한 법적 권리는 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경 기 또는 행사·이벤트에 참가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대학 소속 내지 대표로서 대회·경 기 또는 공식적인 행사·이벤트나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대학에 각 귀속된다.³⁷⁾ 협

29) ‘부당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앞의 내용과 같다.

30) ‘대가’는 ‘금전적 이득’을 의미한다. 이하 ‘대가’의 의미는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31) ‘체결’은 대학 측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에이전트 등 대학 측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대학 측을 대리하거나 대학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32) 학생선수가 장비 사용 및 의류 착용과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장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대학 공식유니폼과 의류를 그대로 착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 훈련이나 경기에서 상업적 상표 또는 로고가 들어있는 장비·의류를 사용·착용할 수 없다.

33) ‘대가’에서 미디어 측에서 교통비 또는 거마비 등 명목의 실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장학금·보조금·학비면제의 혜택 등 회원대학 학칙이나 관련규정에서 정한 재정지원이 아닌 것을 약속하는 경우는 입학 유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35) 대학 자신뿐 아니라 대학의 동문·후원·교우 관련 단체나 개인, 체육위원회 및 이와 연관된 모든 조직·단체나 개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36) ‘끼워넣기식’이란 학생선수를 선발함에 있어서 입학을 허가하기가 어려운 예비학생선수를 입학을 허가하는 다른 예비 학생선수와 함께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회와 대학은 이를 각종 마케팅 사업에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1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각 경우에 교육·홍보 등의 비상업적 목적과 범위 내에서는 협의회 및 대학이 대학 재학 중의 학생선수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에 관한 표지를³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의회, 대학, 대학경기연맹, 협의회·대학이 인정하는 개인·단체가 대학스포츠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협의회, 대학, 대학경기연맹, 협의회·대학이 인정하는 개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학스포츠에 관한 이벤트·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각 경우에 교육·홍보 등의 비상업적 목적과 범위 내에서는 협의회 및 대학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선수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에 관한 표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의회, 대학, 대학경기연맹, 협의회·대학이 인정하는 개인·단체가 대학스포츠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협의회, 대학, 대학경기연맹, 협의회·대학이 인정하는 개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자선·교육·비영리 또는 공익적 이벤트·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학생선수는 대학 재학 중에는 협의회 및 대학의 승인 없이는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생 선수 자신의 성명·초상 등 동일성에 관한 법적 권리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⑤ 이 조의 모든 내용은 학생선수뿐 아니라 경기지도자 등 다른 대학스포츠 구성원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4절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의 위반

제22조(규정 위반)[제9조 2항, 제10조, 제11조 1항] ① 이 장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준수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서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 대학스포츠 참여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장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 또는 운동부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신청 제한·평가 감점·지원 감면 등

37) 예를 들면 협의회가 주최·주관한 대회·경기와 관련한 연습·경기 장면 또는 인터뷰 장면에서의 학생선수의 초상 등의 동일성에 관한 지적재산은 협의회의 소유가 된다. 학생선수가 훈련과 경기에서 대학 유니폼을 입은 경우의 초상 등의 동일성에 관한 지적재산은 대학의 소유가 된다.

38) 학생선수의 초상·성명뿐 아니라 학생선수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캐릭터, 사진, 영상물, 목소리, 기록데이터 등 상표권, 디자인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수 선발 관련 부정·부당 행위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관리 관련 부정·부당 행위의 책임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체육특기자 입학 선발 인원의 제한과 (또는) 협의회 주최·주관 대회·경기의 출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규정 위반이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가 경감될 뿐이다. 과실의 경중 또는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④ 이 장에서 규정한 비윤리적 행위를 한 자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상 상별 규정에 따른 징계·대학스포츠 참여 제한처분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대학경기연맹 또는 소속 대학의 결정에 따른 징계·대학스포츠 참여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협의회와 대학 또는 대학경기연맹이 동일한 규정위반 행위(징계 사유)에 대하여 내린 징계·대학스포츠 참여 제한처분이 동종의 경우에 대학스포츠에 관하여는 가장 중한 것이 효력을 갖고, 이종의 경우에는 각자 효력을 갖는다.³⁹⁾

⑥ 학생선수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 또는 감독·코치 등이 대학의 경기지도자에 채용되기 이전 등 대학스포츠 구성원이 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나 대학스포츠 참여 제한처분을 내릴 수 없다. 다만 협의회 규정에서 대학스포츠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위를 금지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스포츠 구성원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상별규정에 따른 징계나 대학스포츠 참여 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3조(임시처분) ① 이 장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대학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착수 이전에라도 위반과 관련한 수사절차가 진행되거나 혐의의 객관성·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별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징계결정이 내리기 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출전제한, 직무정지 등의 임시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임시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상별위원회가 임시처분의 대상자, 지위, 위반행위, 예상되는 징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제재금, 지위·자격의 전부박탈을 가져오는 임시처분은 내릴 수 없다.

③ 임시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징계절차와 마찬가지로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임시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및 재심은 허용된다.

④ 임시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후 징계절차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징계가 임시처분과 같은 성격이라면 임시처분은 확정된 징계에 포함된다.⁴⁰⁾

39) 예를 들면, 학생선수가 동일한 규정위반 행위로 협의회로부터는 6개월의 출전정지를, 대학경기연맹으로부터는 3개월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대학스포츠에 관하여는 6개월의 출전정지가 적용되며, 협의회로부터는 5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대학경기연맹으로부터는 3개월의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대학스포츠에 대해서는 징계 모두가 적용된다.

40) '임시처분'이 2개월의 출전제한이고 이후 징계절차에서 6개월의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았다면 6개월의 기간에는 임시

- 제24조(신고 및 자인)** ① 대학은 소속 학생선수, 경기지도자가 이 장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거나 당사자 또는 제보자로부터 신고·제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학이 인지하거나 신고·제보를 받았음에도 협의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은폐한 경우에는 협의회는 상벌규정에 따라 대학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이 장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협의회, 대학이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기 이전에 자신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 장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 자인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3장 회원대학과 대학경기연맹

제1절 통칙

- 제25조(대학과 대학경기연맹의 지위)** ① 협의회의 회원인 총장이 대표하는 대학은 대학스포츠의 구성원으로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스포츠에 관한 협의회의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② 대학스포츠에 관한 선수등록 및 대회·경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경기연맹은 대학스포츠의 구성원으로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스포츠에 관하여 협의회의 정책과 제도를 장려하고 지원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제26조(협의회와 대학·대학경기연맹 사이의 통지 등)** ① 협의회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또는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 대학 및 대학경기연맹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통지는 협의회 회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우편, 이메일, 팩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정보제공의 통지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 대학·대학경기연맹이 협의회에 제출하거나 알려야 할 사항의 통지는 대학의 장·대학경기연맹의 장 명의로 우편, 이메일, 팩스의 방법으로 한다.

- 제27조(협의회와 대학·대학경기연맹 사이의 협력 등)** ① 협의회와 대학·대학경기연맹은 대학스포츠에 관한 협의회의 정책 및 제도가 대학스포츠에서 시행되는데 있어서 서로

처분의 2개월 기간도 포함되므로 징계대상자는 징계확정 후 4개월의 출전정지 제한을 받는다.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한다.

- ② 협의회와 대학·대학경기연맹 사이에 대학스포츠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선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
- ③ 대학과 대학경기연맹은 협의회의 총회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및 협의회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이의·재심 절차 또는 전2항의 분쟁조정절차가 아니고서는 이를 다룰 수 없다.
- ④ 대학과 대학경기연맹은 협의회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이 있는 경우에 협의회가 요청하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이에 상응한 징계를 내린다.

제2절 대학

제28조(대학의 사명과 역할) ① 대학의 대학스포츠에 관한 사명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에 있어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 리즘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도록 한다.
 2. 학생선수의 선발 및 학사관리에 있어서 소속 구성원이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
 3. 대학스포츠 활동 및 체육부·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학생선수와 경기지도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어떠한 부당·위법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② 대학스포츠에 관하여 협의회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협의회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회원인 총장이 대표로 있는 대학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학은 이를 시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29조(회원에 대한 경고·자격정지의 효과) [정관 제7조] ① 협의회는 회원인 대학의 장이 협의회의 목적⁴¹⁾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의사회의 의결로써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경고를 받은 경우에 협의회는 대학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41) 협의회 정관(2014. 2. 6. 개정) 제2조(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여 스포츠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며,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고, 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우수한 경기자의 양성과 국민 통합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에 협의회는 대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자격정지를 받은 사유가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대학에 관한 금지행위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되거나 협의회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상별규정에 따른 징계 및 대학스포츠 참여 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자격정지를 받은 사유가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대학에 관한 금지행위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협의회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별규정에 따른 징계 및 대학스포츠 참여 제한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제30조(회원 탈퇴의 효과)[정관 제5조 3항]

- ① 협의회의 회원인 대학의 장은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탈퇴의 효력은 협의회가 탈퇴서를 수리하는 즉시 발생한다.
- ② 전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인 대학의 장이 탈퇴하면 그때로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한다. 회원으로서 이미 납부한 입회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③ 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인 대학의 장이 탈퇴하면 협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경기에 해당 대학의 운동부·학생선수의 출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의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해당 대학과 운동부·학생선수·경기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1조(자격 회복) ① 제29조 1항에 따른 협의회 회원인 대학의 장에게 내린 자격정지가 철회·취소되거나 자격회복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대학에 내려진 징계 및 대학스포츠 참여 제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전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인 대학의 장이 탈퇴 후 다시 회원으로 가입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등록을 하면 그 즉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경기에 운동부·학생선수가 출전할 수 있으며 협의회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대학과 운동부·학생선수·경기지도자는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절 대학경기연맹

제32조(대학경기연맹의 사명과 역할)[제17조] ① 대학경기연맹의 대학스포츠에 관한 사명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선수의 선수 등록 및 대회·경기 개최에 있어서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도록 한다.

2. 대학스포츠의 선진화·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경기연맹의 제도와 행정이 협의회 규정이 정한 대학스포츠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3. 대학경기연맹 제도와 행정에 있어서 학생선수 및 경기지도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어떠한 부당·위법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② 대학경기연맹의 제도 및 행정과 관련한 협의회의 총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사항과 협의회 각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대학경기연맹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33조(대학경기연맹에 대한 지원 등) ①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 대학경기연맹의 의견을 구하여 이를 참조하며, 대학경기연맹은 대학스포츠에 관한 협의회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전향의 대학경기연맹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회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대학경기연맹 관계자를 참여시킨다.
- ③ 대학경기연맹 관계자가 참여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특별히 유보를 두지 않은 이상 대학경기연맹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수행과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가능한 대학경기연맹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협의회와 대학경기연맹이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 수익의 배분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4조(대학경기연맹의 협력 등) ① 대학경기연맹은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경기 개최 등 소관 업무 중 학생선수 선발 및 학사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구하여 처리하며, 학생선수 선발 및 학사관리와 관련한 협의회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② 대학경기연맹은 협의회가 협의회 규정을 위반한 학생선수나 경기지도자 등의 개인 또는 대학에게 내린 징계나 불이익한 처분이 적용되는 대회·경기를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불이익한 처분이 효력을 갖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대학경기연맹은 연맹규정이나 경기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선수나 경기지도자 또는 대학에 징계나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바로 그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4장 학생선수 선발(리크루팅 및 입학전형)

제1절 통칙

제35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① 대학은 학생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전형을 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면 그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학칙과 규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일반적 규정) ① 대학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선수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우선 협의회 규정에 의하며, 협의회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학칙과 관련 규정에 의하며, 대학 학칙과 관련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협의회 규정 또는 협의회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어긋나는 학생선수 선발에 관한 대학의 학칙과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학은 가능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회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제37조(협의회 규정 등에 위반한 학생선수 선발의 효력) ① 협의회 규정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 대학 학칙 및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선수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생선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위 집행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학경기연맹 또는 관련 종목단체의 선수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입학취소 및 학생신분의 유지 여부는 대학의 결정에 따른다.

③ 집행위원회는 위 결정 이전에 학생선수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선수와 부모 또는 그 대리인⁴²⁾은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학생선수는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학생선수 활동 제한 결정에 대하여 상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 및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대학 구성원의 규정 위반 등의 책임) ① 경기지도자, 체육위원회 위원 등 대학 구성원이 학생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입시비리 행위를 저지르거나 협의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가 대학의 지시를 받거나 대학의 동의 내지 승인을 얻고 하였다 하더라도 협의회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2) 학생선수의 부모,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려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지도자, 체육위원회 위원 등 대학 구성원이 학생선수 선발과 관련하여 저지른 입시비리 행위나 협의회 규정 위반이 관행이었다는 사정은 협의회 규정에 따른 징계 등을 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제2절 리크루팅

제39조(예비학생선수 접촉의 인적 범위) ① 예비학생선수 측을 사전⁴³⁾에 접촉할 수 있는 대학 측의 당사자는 체육부장, 체육위원회 위원장, 경기지도자(대학에 채용되고 대학 경기연맹에 경기지도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에 한한다. 이외의 대학 구성원 또는 관련자는 사전에 예비학생선수 측을 접촉할 수 없다.

② 대학 측을 사전에 접촉할 수 있는 예비학생선수 측의 당사자는 예비학생선수 본인, 학부모(친권자인 부모에 한함) 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에 한한다.

③ 예비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경기지도자는 대학 측과 예비학생선수 측의 접촉에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대학 측은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을 유인하거나 도모할 목적으로 예비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경기지도자를 접촉할 수 없다.

④ 예비학생선수 측과 대학 측이 사전에 약속하고 만난 경우는 대화하지 않더라도 접촉으로 간주하고,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우연히 만난 경우에 자리를 피했다면 접촉으로 보지 않는다.

⑤ 대학경기연맹 임직원은 특별한 경우⁴⁴⁾가 아닌 한 특정 예비학생선수의 입학과 관련하여 대학 측 또는 예비학생선수 측을 접촉할 수 없다.

제40조(예비학생선수 접촉의 시간적 범위) ① 예비학생선수 측과 대학 측은 고교 2학년도 종목별 시즌 종료일⁴⁵⁾ 이후부터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접촉할 수 있으며, 접촉할 수 있는 기간(위의 종목별 시즌 종료일부터 입학 합격자 발표일까지, 이하 ‘접촉기간’이라 한다) 이전에는 대학입학과 관련한 접촉을 할 수 없다.

② 협의회는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별 접촉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종목별 접촉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고시는 운영세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위 접촉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예비학생선수가 참가하는 국내·외 대회·경기 기간⁴⁶⁾

43) ‘사전’이란 예비학생선수가 지원한 대학의 입학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예비학생선수에게 합격 통지될 때까지를 의미한다.

44) ‘특별한 경우’란 예비학생선수에 관한 기록·성적 조회 및 열람 등 예비학생선수의 대학 입학에 관한 행정적 처리를 위하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45) 해당 고교2학년도 마지막 대회·경기가 종료되는 날 이후를 의미한다. 동계종목의 경우는 2학년도 2월 내지 4월경에 열리는 마지막 대회·경기가 종료되는 날이 된다.

동안에는 접촉할 수 없다.

- ④ 위 접촉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예비학생선수가 대학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 이전 10일 이전부터 시험일까지는 접촉할 수 없다.

제41조(예비학생선수 접촉의 장소적 범위 및 대면접촉의 횟수) ① 예비학생선수 측과 대학 측의 대면 접촉은 특별한 경우⁴⁷⁾가 아닌 한 대학 캠퍼스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예비학생선수 측을 대상으로 대학이 입시설명회를 하는 경우, 대학 측 당사자가 리크루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비학생선수 측 당사자와 우연히 접촉하는 경우, 대학경기연맹 등 종목 관련단체가 개최하는 일반 예비학생선수 또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이벤트의 경우에는 대학 캠퍼스 밖에서 접촉할 수 있다.
- ③ 대면 접촉은 접촉기간 동안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은 예비학생접촉에 관한 일시, 장소, 당사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한다. 대학은 위 사항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제42조(예비학생선수 접촉시 제안사항)[제19조] ① 대학 측은 접촉기간 동안 예비학생선수 측에게 대학 입시전형 안내 및 설명, 운동부 운영 및 시설 현황, 운동부 운영계획, 학생선수에 대한 일반적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다.

- ② 대학 측은 전항의 사항 이외에 운영 규정 제19조 1항 및 5호가 예시하는 것과 같은 재정 지원 내지 편의 제공을 제안하거나 약속할 수 없고, 예비학생선수 측도 이에 대한 제안이나 약속을 요구할 수 없다.

제43조(예비학생선수에 대한 입시 전 평가)[제20조] ① 대학은 접촉기간 이전에 대학 캠퍼스 안팎에서 예비학생선수나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행사나 이벤트⁴⁸⁾를 열 수 없다.

- ② 대학은 접촉기간 이내에는 대학이 입학전형요강에서 정한 실기시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학생선수의 운동능력을 측정할 수 없다.
- ③ 대학은 접촉기간 이전과 접촉기간 내에 예비학생선수나 고등학교 학생선수가 속한 고등학교 운동부와의 연습경기는 가능하다. 다만 특정 예비학생선수나 고등학교 학생선수에 대한 개별 평가⁴⁹⁾는 할 수 없다.

46) ‘대회·경기 기간’이란 대회 개시일로부터 대회 종료일까지 및 경기 개시일로부터 경기 종료일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대회 참가를 위하여 대회·경기 개시일 전 대회·경기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날로부터, 대회·경기 종료 후 복귀를 위하여 대회·경기 종료일 이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복귀일까지를 포함한다.

47) 예비학생선수 측이 병원 입원, 거동 불편 등 대학 캠퍼스를 방문할 수 없는 사정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48) 캠프, 클리닉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예비학생선수의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9) 연습경기 중 뿐 아니라 이전·이후에 경기 이외에 예비학생선수의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일체의 평가를 의미한다.

제44조(예비학생선수의 입학 전 합숙·훈련참가)[제41조] ① 대학은 예비학생선수가 입학 등록을 하기 이전에는 예비학생선수를 대학 운동부에 합숙케 하거나 운동부의 훈련에 참여시킬 수 없다.

②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이 허가되어 대학이 예비학생선수 측에게 이를 통지한 이후에는 운동부 경기지도자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장)이 허가한 경우에 예비학생선수는 대학 운동부와 함께 합숙 또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예비학생선수에게 입학 등록 전 운동부 합숙 및 훈련 참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예비학생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합숙 및 훈련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제45조(예비학생선수의 합숙·훈련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① 예비학생선수가 입학 등록 전에 대학 운동부와 함께 합숙 또는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경기지도자 등 대학의 관계자는 예비학생선수의 교육과 안전에 주의를 다한다.

② 예비학생선수가 합숙 또는 훈련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예비학생선수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대학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사고가 합숙 또는 훈련과 관련 없는 예비학생선수의 개인적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대학 측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46조(리크루팅 관련 규정 위반) ① 이 장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준수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개인이나 대학은 규정 위반으로서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② 특히 입시비리 행위가 대학 측에 의해서 비롯되거나 위반자가 대학의 소속 구성원인 경우에는 협의회는 운영세칙상 상벌 규정에 따라 위반자 개인에 대한 징계와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대학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체육특기자 입학 선발 인원의 제한과 (또는) 협의회 주최·주관 대회·경기의 출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규정위반이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가 경감될 뿐이다. 과실의 정도 및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제3절 입학전형

제47조(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제21조] ①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정하는데 있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한다.

② 대학은 협의회가 정한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표준요강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전형유형과 전형요소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형방법을 정한다.

③ 대학은 체육특기자 전형요소로 수학능력시험성적(이하 ‘수능성적’), 고등학교학생기록

부(이하 ‘학생기록부’), 실기시험성적, 면접시험성적, 경기실적점수를 반영한다.⁵⁰⁾ 다만 전형유형에 따른 전형요소의 구성 및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은 협의회의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표준요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④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예비학생선수가 고교성적 또는 수능성적에서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한 경우에만 입학을 허가하도록 한다.⁵¹⁾ 다만 최적학력의 기준 및 운영방식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⑤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생선수를 종목별, 포지션별로 모집하며 이에 관한 종목 또는 포지션별 모집인원 등의 관련 내용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요강에 명시한다. 대학은 전형요소(학생기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별 명확하고 상세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미리 공개한다.

⑥ 대학은 매년 다음 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요강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과 관련 자료를 협의회에 문서로 전달하며, 협의회가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한다.

제48조(실기시험)[제21조] ① 대학은 예비학생선수의 입학전형으로 실기시험을 시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합격 여부 판단에 반영한다.

② 대학은 실기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최소 3인으로 구성하

50) 「운영 규정」은 제21조 3항에서 “대학은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에 있어서 수학능력시험성적과 내신성적을 일정 수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여야”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1항에서 적용시점을 “2018학년도 입시부터”라고 규정하였다.

51) 2012.1.26. 법률 제11222호로 제정되고 2013.1.27. 시행된 「학교체육진흥법」은 초중고등학교 운동부학생선수의 이름 바 ‘최적학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이후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3.3.23. 시행된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은 다음과 같이 최저학력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며 평가위원 중 대학 외부인사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대학은 예비학생선수의 실기시험 준비를 위하여 종목별, 포지션별 실기시험 내용 및 평가방식을 사전52)에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대학은 실기시험 요소로 기초체력검사 및 종목별 전문기술 평가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하는 메디컬 테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대학은 실기시험 평가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가능한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 항목당 점수를 산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⑥ 대학은 실기시험 시행시 대학 내·외부의 인사로서 위촉한 감독관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협의회가 위촉하거나 대학의 요청으로 협의회가 선임한 감독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면접시험)[제21조] ① 대학은 면접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최소 3인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중 대학 외부인사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대학은 면접시험 평가에 있어서 비계량화 지표를 가급적 지양하고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대학은 면접시험을 심층면접53)과 구술면접54)의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 내용 및 점수 산정 방식은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④ 대학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면접시험 시행시, 대학 내·외부의 인사로서 위촉한 감독관을 배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협의회에 감독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감독관을 선임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감독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제50조(기타 특별전형·일반전형 및 학생선수 현황 제출) ① 대학은 예비학생선수가 체육특기자 이외의 특별전형 또는 일반전형에서 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정한 평가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매 학년도 3월까지 체육특기자 및 기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한 학생선수 현황55)을 협의회에 제출한다.

③ 대학에 입학한 학생선수는 대학이 성명 등 관련 정보를 협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며, 협의회는 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56)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2) 대학입학전형요강에 실기시험 내용 및 평가기준을 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늦어도 실기시험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한다.

53) 예비학생선수 개인별로 2분 내외 구두발표 후 평가위원이 질의하고 예비학생선수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54) 예비학생선수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인성 및 적성 등을 평가한다.

55) 학생선수의 성명, 국적, 학과, 운동종목, 전 소속 학교를 말한다.

56) 학생선수의 관련 정보가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되거나 교육, 회의 등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있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공개의 범위는 합격 커트라인, 전형요소별 최고 점수·최저 점수·평균 점수이다.

②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응시한 예비학생선수(불합격한 예비학생선수도 포함한다)가 본인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평가결과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⁵⁷⁾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③ 대학은 협의회와 각 위원회가 징계 절차 등에서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관한 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5장 학생선수 학사관리

제1절 통칙

제52조(학사관리지원센터의 운영) ① 협의회는 대학의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학사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학사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사관리지원센터는 대학의 학생선수에 대한 학업기준 및 학사 관련 제도의 내용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대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학사관리지원센터는 협의회 규정과 대학 학칙·규정에 따라 학생선수의 선발, 학점, 수업출석, 시험 등 학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학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대학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학사관리지원센터는 전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과 및 필요 조치 사항을 대학에 통지한다. 대학은 학사관리 지원센터의 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협의회는 학사관리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53조(학업기준의 적용)[제22조] ① 대학은 학생선수의 학업 기준에 대해 학칙 또는 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학생의 학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학업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를 위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학업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학생선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학업 기준은 가능하나, 특정 소

57) 관련 국가법령이나 대학 학칙 기타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수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업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 제54조(학생선수에 대한 학업기준의 제정·시행 및 학습지원)[제22조]** ① 대학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학업 기준을 제정·시행하려면 대학의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허가에 의하여야 한다.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학업 기준은 대학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②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학업기준의 내용은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되어 가능한 일반학생에 대한 학업기준에 가깝도록 한다. 다만 수업일수, 학기당 취득학점,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출석일수, 졸업 취득학점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한다.
- ③ 대학은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학업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의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학업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협의회에 이를 제출한다.
- ④ 대학은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수업보충, 학생선수의 학습지원 등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학사운영

- 제55조(학점취득)** ① 학생선수는 대학이 학칙에서 정한 학기당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대학이 학칙에서 정한 졸업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학생선수는 관계법령이나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 타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제24조 2항]
- ③ 협의회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소집 또는 해외 훈련을 위해 부득이 장시간 대학을 벗어날 경우에 국가대표 선수촌 또는 체류체역 대학 등에서 인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한다.
- ④ 협의회와 대학은 학생선수에게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또는 해외 타대학 취득 학점 인정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⁵⁸⁾으로 알려줘야 한다.

- 제56조(수강)[제23조]** ① 학생선수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대학 규정에서 정한 수강신청 기일 내에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대회·경기 참가 등 특별한 사

58) 협의회의 경우 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대학의 경우 학생선수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본다.

정으로 공결처리 되는 경우⁵⁹⁾가 아닌 한 수강신청 과목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학생선수는 수강 신청시 대회·경기 일정을 고려하여 실제 수강이 가능한 과목을 선정하여 수강 신청하도록 한다. 대학은 지도교수나 학과(부)장으로 하여금 학생선수가 실제 수강이 가능한 과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급 선수로 선발 소집 또는 대회·경기 참가 등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는 공결승인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담당교수에게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은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전3항과 같이 학생선수가 불가피하게 결석한 경우에는 공결처리하여 출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학생선수가 결석한 경우 전3항 또는 대학 규정에 의하여 공결처리되는 경우 이외에는 결석처리 한다.

⑤ 대학은 해외 훈련 또는 대회·경기 참가를 하는 학생선수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대면이 아닌 방법⁶⁰⁾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에 의하여 수강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선수가 수강신청 과목 강의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학생선수는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급 선수로 선발되어 연습과 대회·경기 참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간⁶¹⁾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어 수업 참석 및 시험 응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의에 의하여 휴학할 수 있다. 휴학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학점 제도 등의 방법으로 학점 취득이 불가능함으로써 입을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한다.[제24조 1항]

제57조(시험과 성적) ① 대학은 학생선수에 대한 학업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동일한 교과목에 관하여는 일반학생과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성적 평가 기준에 의하여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② 대학은 학생선수가 해외 훈련 또는 대회·경기 참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교수로 하여금 추가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선수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은 추가시험신청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학생선수가 시험 또는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

59) 대학이 관련 규정에 의해 공결처리하여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각 경우를 들 수 있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사람
3.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사람
4. 생리공결을 신청한 사람.
5.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한 사람

60) 인터넷·가상 강의, 서신 등 원거리 학습이 가능한 방법으로 말한다.

61)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급 선수로 선발되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담당교수로 하여금 평가하는 방법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8조(경기·대회 출전 제한)[제25조] ① 대학은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과 제2항⁶²⁾의 규정 내용을 학생선수에게 반드시 주시시켜야 하며, 학생선수로부터 이를 확인하였고 자신의 성적 및 출결 관련 정보를 협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동의서를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② 대학은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이 준수되도록 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학생선수에 관한 성적 또는 수업 출결에 관한 현황을 요청할 시에는 제출한다. 협의회는 현황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의 출전제한은 협의회가 주최·주관하지 않거나 협의회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회·경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대학은 학생선수가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의 출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회·경기 참가에 대해서는 수업 참석·시험 응시 및 성적 평가에 있어서 학칙과 규정 사항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⁶³⁾

④ 대학은 매 학기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학생선수의 리스트를 협의회에 제출한다.

제59조(휴학·복학 및 제적·복적과 학생선수 활동) ① 학생선수가 학칙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 및 제적 처리가 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학칙과 규정에 따라 복학 및 복적 처리가 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대학을 대표하는 학생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② 학생선수가 위와 같이 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동부 훈련 및 합숙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상, 질병, 가정형편 등의 사유⁶⁴⁾로 인하여 일시 휴학한 경우에는 경기지도자의 요청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운동부 훈련 및

62) ① 학생선수는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C⁰ 이상을 취득하여야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② 학생선수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이나 출석 일수의 미달로 유급된 경우에는 다음 학기 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부상이나 질병, 가정빈곤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유급된 자는 협의회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수활동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운영 규정(2016. 1. 개정)이 부칙 제1항에서 “제1항은 운영 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위 제1항은 2017. 2.부터 시행된다.

63) 예를 들어 프로골프 등 프로스포츠단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출전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프로골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참가로 인하여 수업을 결석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칙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석 또는 미응시 처리하여야 한다.

64) 대학경기연맹 등 소속단체 또는 대학에 의하여 징계 등의 제재, 수사절차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합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③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의하여 휴학한 학기 또는 제적당한 학기에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기 출전 제한을 받은 학생선수는 이후에 복학 및 복적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그대로 받게 된다⁶⁵⁾.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3절 학생선수에 대한 재정지원

제60조(학생선수에 대한 재정지원) ① 대학은 학칙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선수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대학이 학생선수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학칙과 규정이 정한 등록금⁶⁶⁾·기성회비의 면제·감액,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⁶⁷⁾의 지급에 한한다. 대학은 원칙적으로 이 범위 외의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③ 대학은 학생선수가 훈련이나 대회·경기 참가하는데 드는 교통비, 숙식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종목의 운동부가 훈련이나 대회·경기에 참가하거나 개인종목의 학생선수가 대학을 대표하여 대회·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대학은 학생선수에게 대회·경기 성적에 결부되거나 일정 기록·성적을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대학은 학생선수를 대학 홍보나 광고 모델로 사용하는 경우에 출연에 대한 대가로 하는 일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홍보나 광고 모델 활동에 드는 교통비, 숙식비 등의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는 있다.

제61조(재정지원 학생선수의 자격 및 지원기간) ① 학생선수는 정규 학기 등록을 하고 있는 동안에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휴학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 대학의 학칙과 규정이 정한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며 대학은 재정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② 대학이 학생선수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은 1학년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칙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5) 예를 들어 2017학년도 1학기에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여 대회 출전 제한을 받다가 1년 간 휴학 후 2018학년도 1학기에 복학한 경우에 그대로 대회 출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2018학년도 1학기에는 대회출전이 제한된다.

66)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

67) 기숙사비, 피복비, 교재비, 교통비 등 학칙과 규정이 정한 학비보조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제4절 대회·경기 참가 및 합숙·훈련

제62조(단체종목의 학기 중 대회·경기 참가)[제27조] ① 대학은 단체종목에 관한 것으로서 협의회가 주최·주관⁶⁸⁾ 또는 승인⁶⁹⁾하지 않은 대회·경기에는 운동부 및 학생선수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⁷⁰⁾

② 협의회는 단체종목에 관한 대회·경기를 주최·주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관리의 정상화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주말리그제 또는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학기 중 또는 연중 리그제의 방식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대학경기연맹 등 대학스포츠 대회·경기를 개최하는 단체와 긴밀히 협의한다.

③ 협의회는 학사관리의 정상화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학경기연맹 등이 개최하는 단체종목에 관한 대회·경기가 학기 중 대회로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각 대학에 참가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대학은 특별한 경우⁷¹⁾가 아닌 한 협의회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종목의 학기 중 대회·경기 참가) ① 대학은 개인종목에 관한 것으로서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지 않은 대회·경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⁷²⁾ 학생선수의 대회·경기 참가가 학사관리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중대한 침해를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대회·경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선수는 전항에 의하여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지 않은 대회·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회·경기 참가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에게 참가 허가를 신청하여 대학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대학의 장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4조(방학 중 대회·경기 참가) ① 대학은 단체종목에 관하여는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협의회가 주최·주관하지 않은 대회·경기인 경우에도 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참가시킬

68) 협의회가 대학경기연맹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9) 학사관리의 정상화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협의회 또는 대학경기연맹 등이 주최·주관하는 학기 중 리그방식의 경기대회, 방학 중 대회, 국제대회,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를 제외한 경기대회는 원칙적으로 협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대회이다. 학기 중 대회가 대표적이다.

70) 운영 규정(2016.1. 개정) 제27조(협의회 비승인 대회의 참가 금지)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① 학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은 협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는 소속 운동부 및 학생선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사관리의 정상화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학은 국제대회 · 전국체육대회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학기 중 대회에 소속 운동부 및 학생선수의 참가를 최대한 지양한다.

한편 운영 규정(2015. 1. 제정) 부칙 제1조는 “제27조 2항은 이 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제27조 2항은 2016. 2.부터 시행된다.

71) 대회·경기 기간이 단기간이고 장소가 대학에 가까워 학기 중 대회로 인하여 학생선수의 수업 참석 및 시험 응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72) 대회 주최자, 대회의 성격, 대회 기간, 대회 장소, 수업 결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 있다. 다만 방학 중 대회·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는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각 2회에 한한다. <개정 2016. 12. 8.>

② 개인종목에 관한 학생선수는 방학 중 대회·경기에는 언제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대학에 참가에 관한 사항⁷³⁾을 알려야 한다.

제65조(훈련 및 휴식 시간) ① 대학은 운동부 및 학생선수의 훈련시간이 하루 최대 4시간, 주당 최대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대학은 운동부 및 학생선수에게 훈련 중 적정한 휴식시간⁷⁴⁾을 주어야 한다.

③ 대학은 특별한 경우⁷⁵⁾이외에는 운동부 및 학생선수가 주말 또는 야간에 훈련하지 않도록 하며 1주일에 1일은 휴식일로 정하여 운동부 및 학생선수가 훈련하지 않도록 한다.

④ 대학은 종목별 시즌 종료 후⁷⁶⁾ 다음 시즌 개시 전의 기간 또는 1학년도 기간 내에 1개월 정도의 비훈련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운동부 및 학생선수가 휴식, 자기개발, 부상치료 등을 하도록 한다.

제66조(합숙)[제41조] ① 대학 운동부는 대학 안 또는 밖에서 학생선수가 단체로 숙식할 수 있는 합숙소 기타 합숙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합숙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대학 운동부가 합숙 훈련을 하는 경우에 합숙소 기타 합숙 장소는 가능한 학생선수의 편의와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대학은 특별한 경우⁷⁷⁾가 아닌 한 학생선수가 합숙 훈련 여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선수에게 합숙을 강요하거나 학생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합숙케 할 수 없다.

④ 학기 중 합숙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⁷⁸⁾이 없는 한 야간 훈련과 주말훈련을 할 수 없으며, 학생선수에게 야간과 주말에는 자유시간을 부여한다.

⑤ 방학 중 또는 종목별 시즌 종료 후 다음 시즌 개시 전 기간에는 특별한 경우⁷⁹⁾ 이외에는 합숙훈련을 갖지 않도록 한다.

73) 대회명, 대회장소, 대회기간 등을 말한다.

74) 종목별 경기규칙에 따른 경기 중 휴식시간(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45분 전반전 후 15분 휴식)이 적정 휴식시간 판단에 참고가 될 것이다.

75) 참가하는 대회·경기가 임박하여 주말 또는 야간 훈련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76) 해당년도 마지막 대회·경기가 종료되는 날 이후를 의미한다.

77) 학생선수의 주거지와 대학 사이의 거리상 합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정 대회 참가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대회 준비를 위해 합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78) 경기가 야간에 열려 야간 경기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훈련 장소 이용 상 야간에 훈련이 가능한 경우 등을 말한다.

79) 방학 중 또는 시즌 개시 후 대회에 참가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회 준비를 위해 합숙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절 학생선수의 재학 중 실업·프로 진출[제26조]

제67조(학생선수의 실업·프로 진출)[제26조] ① 학생선수는 재학 중에는 대학 졸업 이전이라도 실업 또는 프로(외국의 실업 또는 프로를 포함한다)에 진출할 자격을 구비하였으면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할 수 있다. 대학은 학생선수가 졸업 이전에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이를 제지할 수 없다.

② 학생선수가 재학 중 대학 졸업 이전에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단 협상 등 실업 또는 프로 진출과 관련 일을 대학 외부의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실업팀 또는 프로팀 관계자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즉시 대학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대학은 재학 중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선수가 있거나 이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의회에 알린다.

④ 대학은 재학 중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하는 학생선수가 발생한 경우 이적동의서 등 실업 또는 프로팀 소속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은 대학경기연맹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공식 절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학 측은 재학 중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협력하는 대가로 학생선수 측이나 실업팀 또는 프로팀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다만 실업팀 또는 프로팀이 단체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 지급하는 재산상 이익은 수령할 수 있다.

제68조(실업·프로 진출과 대학스포츠 참가 자격)[제26조] ① 학생선수가 실업팀 또는 프로팀 입단과 관련하여 실업팀 또는 프로팀과 구두 또는 문서상으로 입단 또는 선수활동과 관련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그 때부터 대학스포츠에 참가할 수 없다.

② 학생선수가 수료 또는 졸업 후에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입단하는 경우라면 재학 중에 드래프트 참가 신청하더라도 드래프트에서의 지명 여부와 상관없이 수료·졸업이전까지는 대학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을 갖는다.

③ 전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실업 또는 프로단체의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가 드래프트 절차에서 지명을 받아 졸업 전 실업 또는 프로경기에 뛸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지명과 동시에 대학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을 잃는다. 다만 지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료 또는 졸업까지 대학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제69조(실업·프로 진출과 학생자격) ① 학생선수가 재학 중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로서의 자격 또는 체육특기자로서의 지위와 대학스포츠에 참가할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일반학생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② 재학 중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하는 학생선수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대학에 계속 재학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할 수 있다. 대학은 재학 중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하는 학생선수가 재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과 규정에 따라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수업, 시험, 성적 학점 등 학사관리를 한다.
- ③ 대학은 매 학기 실업 또는 프로에 진출한 재학·휴학·퇴학 학생 현황을 협의회에 알리며 협의회가 이에 과한 세부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력한다.

제6장 대회·경기 운영

제1절 통칙

- 제70조(대회·경기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① 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경기와 관련하여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관련 규정 및 결정에 따른다. 다만 대학경기연맹 등 대회·경기를 실제 운영하는 단체에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결정권을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 ② 협의회가 주최·주관하지 않는 대회·경기를 개최 또는 운영하는 자(단체 포함)가 협의회로부터 대회·경기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 제71조(일반규정)** ①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대회·경기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대회·경기 규정 및 운영요강에 의한다. 다만 대회·경기 운영요강 및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대학의 학생선수 학사관리의 정상화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대학은 협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경기에는 운동부나 학생선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2조(대회·경기 운영 및 시설 안전기준)[제35조]** ① 협의회는 대학의 학생선수 학사관리의 정상화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경기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 ② 협의회는 대회·경기 운영에 있어서 학생선수·경기지도자·관중 등 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회·경기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제정·시행되는 대회·경기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 등에 대해서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은 대학 등은 대회·경기 운영과 관련하여 대회·경기 개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절 대회·경기 운영

제73조(대회·경기의 방식)[제31조] ①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대회·경기는 학기 중에는 리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말리그 또는 홈앤드어웨이 등 구체적인 리그 방식은 대회·경기에 따라 대학경기연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대회·경기로서 개최 시간 및 기간에 비추어 학생선수에 관한 학사관리 및 학습권 보장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대회·경기로서 개최 시간 및 기간에 비추어 학생선수에 관한 학사관리 및 학습권 보장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종목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리그 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전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리그 또는 토너먼트 방식의 대회·경기를 하더라도 가능한 학생선수에 관한 학사관리 및 학습권 보장에 미치는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4조(대회·경기 시간) ① 협의회는 대회·경기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선수에 관한 학사관리 및 학습권이 장애받지 않도록 개최 시간 및 기간을 설정한다.

② 협의회가 대학경기연맹과 대회·경기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대학경기연맹과 협의하여 학생선수에 관한 학사관리 및 학습권이 장애받지 않도록 개최 시간 및 기간을 설정한다.

③ 협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대회·경기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개최 시간 및 기간으로 학생선수에 관한 학사관리 및 학습권이 중대하게 장애받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수 있다.

제75조(대회·경기 장소)[제32조] ①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대회·경기는 대회·경기 규정 및 운영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또는 대학경기연맹 등이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된다.

②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대회·경기가 주말리그의 방식인 경우에는 대회·경기 규정 및 운영요강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홈앤드어웨이의 방식인 경우에는

홈팀의 대학이 정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홈팀의 대학이 정한 장소에서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 또는 대학경기연맹 등이 정한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 제76조(대회·경기의 승인 및 취소 등)[제27조]** ① 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학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대회·경기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단체 포함)는 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와 같이 대학생 이외의 학생이나 일반부 선수가 참가하는 종합 국내 대회·경기나 대학 학생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대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전항에 의해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늦어도 대회·경기 개최일 3개월 전까지 대회·경기 규정 및 운영요강에 관한 자료, 계획서, 개최 확인에 필요한 서류⁸⁰⁾를 첨부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전2항에 따른 대회·경기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학생선수 학사관리, 학생선수 학습권, 대회·경기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④ 협의회는 전3항에 따른 대회·경기 승인을 할 경우에 학생선수 학사관리, 학생선수 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대회·경기 승인 후 대회·경기 장소, 시간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에 대한 추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협의회는 승인 신청의 내용에 거짓이 있는 등 신청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승인 후 대회·경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사정이 보이는 경우 등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안전관리

- 제77조(대회·경기 운영의 안전관리)[제35조]** ① 협의회는 주최·주관하는 대회·경기 운영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경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단체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협의회는 대회·경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되, 안전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②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 대회·경기에서 홈경기를 개최하는 대학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고예방 관련 의무를

80) 대회·경기 개최와 관련한 경기장 사용의 권한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관 계약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서 등)를 의미한다.

준수한다.

③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대회·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차량 및 의료인 대기 등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대회·경기에서 응원단(서포터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경기장내 관중석 위치를 정하여 지정된 구역에 위치하도록 하고 응원단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⑤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대회·경기 운영의 안전관리 점검 및 감독을 위하여 협의회는 감독관을 선임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대회·경기 시설의 안전관리) ① 협의회는 주최·주관하는 대회·경기 운영에 있어서 경기장 등 대회·경기 시설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회·경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단체 포함)로 하여금 대회·경기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② 흄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 대회·경기에서 흄경기를 개최하는 대학은 대회·경기 개최 이전에 시설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고예방 관련 의무를 준수한다.

③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대회·경기 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및 감독을 위하여 협의회는 감독관을 선임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안전관리 사고 관련 대회·경기의 중단·취소) ① 협의회는 주최·주관하는 대회·경기가 개최되기 이전에 운영 및 시설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상의 위험·사고 발생이 예견되거나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회·경기 개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승인한 대회·경기가 개최되기 이전에 운영 및 시설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상의 위험·사고 발생이 예견되거나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회·경기 개최의 취소 또는 연기를 개최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개최권자는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개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대회·경기가 개최되는 도중에 운영 및 시설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상의 위험·사고 발생이 예견되거나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대회·경기 진행을 중단하고,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장 재정 및 마케팅

제1절 통칙

- 제80조(일반규정)** ① 협의회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매년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 및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대학 운동부 지원 등의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마케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정·마케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운영 및 마케팅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재정 운영 및 마케팅 시행의 효율성 및 투명·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진단을 할 수 있다.

제2절 협의회의 재정

- 제81조(재정 관련 사무의 관리)** ①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다만 수입에 관한 사무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의 임명은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모든 수입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 ③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직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 ④ 기타 수입·지출 사무는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제82조(학생선수·경기지도자에 대한 지원)[제56·57조]** ① 협의회는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른 학생선수·경기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가능한 모든 학생선수·경기지도자가 지원 신청의 대상자가 되도록 한다.
- ② 협의회는 전항의 학생선수·경기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절차,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전2항의 기준에 있어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징계 등을 이유로 하는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

- 제83조(대학에 대한 지원)[제56조]** ① 협의회는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른 대학에 대한 지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가능한 모든 대학이 지원 신청의 대상자가 되도록 한다.

② 협의회는 전항의 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절차, 지원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전2항의 기준에 있어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징계 등을 이유로 하는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84조(대학 운동부의 평가 및 지원) ① 협의회는 관련 주무관청이나 정부기관의 지원 또는 협의회 재정으로 대학 운동부 평가와 연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전항의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학생선수 및 경기지도자 확보 및 역량, 학생선수 학사관리 및 지원, 대학운동부 사회적 협력 등에 관한 요소를 기초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학의 운동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전항의 대학 운동부 평가와 관련하여 지원 자격요건, 절차, 범위 등을 정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대학 운동부 평가 결과에 의한 등위에 따라 대학 운동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학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지원의 보류·철회 및 감축) ① 제82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학생선수·경기지도자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기재사항에 있어서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된 경우, 지원 결정 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83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대학이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기재사항에 있어서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된 경우, 지원 결정 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제84조에 따른 대학 운동부 평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또는 지원 결정 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제3절 마케팅

제86조(협의회의 마케팅의 통합적 관리)[제48조] ① 협의회는 정관 및 운영 규정 제48조에 따라 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학스포츠 대회·경기 및 행사와 관련한 마케팅 권리 및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②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마케팅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 가이드라인 및 프로그램은 운영세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대학, 대학경기연맹, 학생선수, 경기지도자는 협의회의 대학스포츠 마케팅 통합적 관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대학스포츠 마케팅 통합적 관리에 위배되거나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마케팅 사업 및 권리의 위탁 또는 대행)[제48조] ① 협의회는 마케팅 권리 및 사업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려면 사전에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협의회는 마케팅 권리 및 사업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려면 공개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⁸¹⁾에는 제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마케팅 권리 및 사업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경우에 마케팅 권리 및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전2항의 특별한 경우에는 마케팅 권리 및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8조(대학 및 학생선수 등의 퍼블리시티권) ①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마케팅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의 명칭, 엠블럼, 로고 등과 학생선수·경기지도자의 성명,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학과 학생선수·경기지도자는 위와 같은 협의회의 사용이 협의회의 대학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위한 목적 및 범위 내이라면 위의 명칭과 초상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행사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② 협의회는 전항과 같이 대학과 학생선수·경기지도자의 관한 퍼블리시티권 행사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금은 협의회의 수입으로 계상 처리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학과 학생선수·경기지도자에게 배분할 수 없다.

③ 협의회는 제1항의 대학과 학생선수·경기지도자에 관한 퍼블리시티권 행사로 인한 수익금을 대학 또는 학생선수·경기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사업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55조]

제89조(매복마케팅의 금지)[제58조 제2항] ① 대학스포츠에 관한 마케팅 사업권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마케팅자산을 사용하거나 협의회가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대학스포츠 대회·경기 및 행사와의 관련성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마케팅 사업권을 보유한 자가 그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된다.

② 마케팅 사업권자가 아닌 자가 대학스포츠 대회·경기 및 행사와 관련한 응원 행위 또

81) 위임·위탁 또는 대행하려는 자가 선개런티를 지급하거나 계약조건으로 협의회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 및 마케팅 사업의 능력이 검증된 경우 또는 우선협상권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는 이와 관련된 문구나 용어 또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은 협의회와 마케팅 사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본다. 협의회는 손해배상, 부당이득의 반환, 금지청구의 민사상 청구 및 형사 고소·고발 등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대회·경기 및 행사와 관련한 협의회와 마케팅 사업권자의 권리 를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및 금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90조(졸업 학생선수에 대한 초상·성명에 관한 권리의 사용) ①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는 대학을 졸업⁸²⁾한 학생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무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에 관한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 우⁸³⁾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은 최 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학을 졸업한 학생선수는 협의회 및 대학의 위와 같은 성명, 초상 등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8장 분쟁조정 및 상벌

제1절 통칙

제91조(절차의 비공개 및 비밀 유지) ① 분쟁조정 및 징계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관계자를 참석케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심리 진행상 심리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심리과정의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로서 유지하며,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사실 및 기 록에 대해서 언론 및 기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제92조(대리인) ① 분쟁조정의 당사자 및 징계 심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
2.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변호사

82) 자퇴하거나 수료 등의 사유로 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83) 학생선수가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학생선수의 초상·성명 들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의 재고가 남아 대학 졸업 이후에 도 판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② 대리인의 권한 및 자격은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③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調停案)의 수락
 3. 복대리인(復代理人)의 선임

제2절 분쟁조정

- 제93조(분쟁조정위원회 및 중재판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구성원간의 대학스포츠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정관 제27조에서 규정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학 교수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자, 대학스포츠 관련자로 구성된 3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한 자를, 회장이 각 위촉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위원장이 나머지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분쟁 중재 및 조정의 심결을 담당하도록 한다.
- ⑤ 중재판정부 심결이 아닌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1/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4조(위원장의 임무와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결 절차를 지휘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업무, 심결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중재판정부 심결과 관련하여서는 나머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중재판정부 위원으로 지명한다.

- 제95조(위원의 제척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법률적·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직책에 있거나 친인척관계가 있을 경우

3. 기타 결정의 공정성에 현저한 저해가 있는 경우

-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전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통보하거나 중재판정부 참가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 참가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중재판정부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자격 심의 요청 문서 요청에는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 위원 기피신청 요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중재판정부 위원으로 지명한다.
- ⑤ 기피신청 요청 수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을 동안, 해당 위원이 참석하여 결정한 해당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

제96조(분쟁조정위원회 심결 대상)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 1. 협의회와 대학 간의 대학스포츠에 관한 분쟁(대학스포츠 참여제한 처분 포함)
- 2. 협의회 대학 간의 대학스포츠에 관한 분쟁
- 3. 대학과 대학경기연맹 간의 대학스포츠에 관한 분쟁
- 4. 협의회, 대학, 대학경기연맹과 학생선수·경기지도자간의 대학스포츠에 관한 분쟁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사항이 아닐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당사자들이 적절한 조정, 중재 기관을 찾도록 통보한다.

제97조(조정의 신청 및 각하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협의회에 별지 제3호의 서식 분쟁조정합의서와 함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의회 지정 계좌에 분쟁조정 수수료 금 일백만(1,000,0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필요 사항이 기재되고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분쟁 당사자(본인과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 2. 법적 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성명과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및 법적으로 분쟁당사자를 대리한다는 위임장
- 3. 분쟁 관련 통지를 받을 수령인 및 수령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
- 4. 분쟁에 대한 설명 및 본건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
- 5. 분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
- 6. 분쟁과 관련된 문서 및 기타 증거 자료(예 : 계약서, 서신 등)
- 7. 금전적 분쟁일 경우 정확한 금액(계약금, 이적료 등)과 그 영수증 혹은 입금증
- 8. 신청서 작성 일자와 분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법적 대리인이 있을 경우 법

적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9. 분쟁조정 수수료 금 일백만(1,000,000)원 입금증

② 협의회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조정에서는 사무처장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 또는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분쟁당사자는 해당 기한까지 보완 내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5항에 정한 시한까지 보완되지 않거나 해당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8조(심리 절차) ① 제출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사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한 후에 해당 사건의 결정문을 작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를 공정히 대하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 및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증인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관련자에게 심리개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리 일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심리 장소는 원칙적으로 협의회 내 장소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회가 지정하는 외부의 장소로 할 수 있다.

⑤ 심리 일시와 장소(변경되는 경우 포함)는 심리 개시 5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⑥ 위원장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심리 일시 및 장소에 분쟁당사자의 출석 및 그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⑦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통지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기재한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팩스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9조(화해 권고) ①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중재·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중재·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가 화해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화해하였음을 협의회 공문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100조(심리 종결과 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종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일 시한 이전에 종결된 심리를 재개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의 모든 결정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결정문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재판정부 위원 중의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작성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심리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한 후, 협의회 의 공문에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1. 당사자 쌍방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 위원 이름
4. 주문
5. 결정의 이유 (생략 가능함)
6. 결정 연월일

④ 결정문의 통보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팩스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결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협회 상벌위원회에 통보하고 당사를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
⑥ 심리 및 결정 결과에 근거하여 분쟁으로 인한 간접손해 비용과 분쟁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1조(결정의 효력 및 공개) ①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 및 재심을 요청할 수 없고 결정의 당부 또는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⁸⁴⁾ 결정 내용 및 취지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전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중재판정부가 결정 내용 및 취지의 공개 결정 을 하는 경우 협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공개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 등 당사자에 관한 신상정보는 삭제한다.

제3절 상벌

제102조(상벌위원회의 구성) ① 상벌위원회는 정관 제27조 및 운영 규정 제61조 및 제

84) 결정 내용 및 취지의 공개가 유사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분쟁 해결의 지침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결정의 내용 및 취지의 내용상 공개가 대학스포츠 구성원에게 교육·지도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63조에 따라 구성한다.

- ② 상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협의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상별위원회 위원은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103조(위원장의 권한과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04조(표창의 제한)[제6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상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중이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4. 기타 표창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5조(징계의결 요구 및 조사·수사의 요청) ① 협의회 회장은 운영 규정 제67조의 징계 심의 대상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상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징계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 주무관청이나 정부기관의 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대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제106조(징계절차의 중지) ① 징계심의 대상에 대하여 관련 주무관청이나 정부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징계 의결의 기한) ① 상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전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전항의 징계의결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징계사유의 시효)[제78조] ① 운영 규정 제78조의 징계심의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106조에 의하여 징계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위 2년에 산입되지 않는다. 위 경우에 중지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상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징계시효의 정지)[제78조] ① 운영 규정 제78조의 징계사유 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정지된다.

1. 징계사유에 관한 언론보도

2. 징계사유에 관한 협의회, 대학, 대학경기연맹에의 제보, 신고 등

② 전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정지되며, 6개월이 만료되는 날부터 남은 징계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제110조(징계 의결)[제72조] ① 상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 요구 전 또는 징계 심사 도중에 사임, 임기만료, 퇴학, 미등록 등의 사유로 대학, 대학경기연맹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 요구 이전에 자신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징계의 효과(내용) 및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의한다.

제111조(징계의 공개) ① 상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⁸⁵⁾ 징계 결정 내용 및 취지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전항에 따라 상별위원회가 징계 결정 내용 및 취지의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협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성명, 주소 등 징계대상자에 관한 신상정보는 삭제한다.

85) 결정 내용 및 취지의 공개가 유사 징계사유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징계사유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결정의 내용 및 취지의 내용상 공개가 대학스포츠 구성원에게 교육·지도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장 보칙

- 제112조(운영세칙의 변경)** ① 운영세칙(징계양정기준을 포함한다)은 협의회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협의회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세칙의 변경은 집행위원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상별위원회의 징계의결 이전에 운영세칙의 변경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기준이 감경될 때에는 변경 후 운영세칙에 의한다.

- 제113조(운영세칙 미규정 사항)** ①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조의 변경 절차를 통해 운영세칙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으로써 규율한다.
② 관련 사안이 중요하고 그 처리가 긴급하나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6. 5. 9. 이사회 심의·의결(제정), 2016. 6. 21. 총회 보고〉

-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협의회 정관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의 각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징계양정기준

2016. 5. 9. 제정

1. 징계의 효과(내용)[운영규정 제68조]

대상	징계의 종류	효과(내용)
학생선수	경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조심하도록 주의를 줌.
	표창취소	표창 수여가 철회되고 표창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이 취소하거나 회수됨.
	출전정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대회·경기의 참가 및 참석이 금지됨.
회원대학	경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조심하도록 주의를 줌.
	표창취소	표창 수여가 철회되고 표창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이 취소되거나 회수됨.
	제재금	일정한 금액을 기한 내 협의회에 납부할 것이 강제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추가 제재가 부과됨. 금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함. 제3자의 대납은 허용되지 않음.
	출전정지	해당 대학 운동부의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대회·경기의 참가 및 참석이 금지됨.
	체육특기자 입학 선발인원 제한	특정학년도의 대학 체육특기자 전체 또는 종목별 입학 선발인원 수의 제한을 받음.
	회원자격 박탈	장래에 향하여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고 일체 협의회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배제됨.
경기지도자 및 심판	경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조심하도록 주의를 줌.
	표창취소	표창 수여가 철회되고 표창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이 취소되거나 회수됨.
	제재금	일정한 금액을 기한 내 협의회에 납부할 것이 강제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추가 제재가 부과됨. 금액은 50만 원 이상으로 함. 제3자의 대납은 허용되지 않음.
	출전정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대회·경기의 참가 및 참석이 금지됨.

2. 유형별 징계 기준

구분	유형(위반행위)	대상 및 징계기준		
		학생선수	회원대학	경기지도자, 심판, 기타 개인
1. 비윤리적 행위	가. 도박 관련 행위(제11조)	출전정지 3월~2년		출전정지 3월~2년
	나. 인권 침해 행위(제12조)	출전정지 3월~2년		출전정지 3월~2년
	다. 승부조작·담합 행위(제13조)	출전정지 6월~4년		출전정지 6월~4년
	라. 도핑 관련 행위(제14조 2항) ⁸⁶⁾	출전정지 6월~2년		출전정지 6월~2년
	마. 스포츠공정 위반 행위(제15조)	출전정지 6월~4년		출전정지 6월~4년
	바. 학생선수 선발 관련 부정부당 행위(제16조)	출전정지 6월~4년	6월~2년간 체육특기자 입학 선발 인원 제한 또는 협의회 주최·주관 대회 출전정지 (병 과 가능)	출전정지 6월~4년
	사. 학사관리 관련 부정부당 행위(제17조)	출전정지 3월~2년		출전정지 3월~2년
2. 아마추어리즘 위배	가.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학생선수의 운동능력 이용(제19조 1항 및 제 20조 1항)	경고 또는 출전정지 6월 이하		경고 또는 출전정지 6월 이하
	나. 경기참가 관련 부당한 대가 수령·제안 수락(제 19조 2항 및 제20조 2항)	경고 또는 출전정지 1년 이하		경고 또는 출전정지 1년 이하
	다. 영리 목적 광고 등 활동(제19조 3항 및 제20조 4항)	경고 또는 출전정지 6월 이하		경고 또는 출전정지 6월 이하
	라. 재학 중 프로 또는 실업팀과 선수약정(제19조 4항 및 제20조 3항)	출전정지 3월~1년		출전정지 3월~1년
	마. 예비학생선수에 대한 입학 유인 목적 재산상 이익 제공 등(제20조 5항)	출전정지 6월~2년		출전정지 6월~2년

86) 운영세칙 제14조 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관련 제재절차에 따른 심리 및 의결이 있으므로 협의회에서는 별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다. 만약

구분	유형(위반행위)	대상 및 징계기준		
		학생선수	회원대학	경기지도자, 심판, 기타 개인
3. 위반사항 미통지 등	대학이 인지하거나 신고·제보를 받은 소속 학생선수·경기지도자의 규정위반을 협의회에 통지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한 경우(제24조)		제재금1,000만 원 이하	
4. 리쿠르팅 규정 위배	가. 접촉 당사자 이외의 자와의 접촉(제39조)	출전정지 6월 이하	6월~2년간 체육특기자 입학 선발 인원 제한 또는 협의회 주최·주관 대회 출전정지 (병과 가능)	출전정지 6월 이하 또는 제재금 1,000만 원 이하
	나. 접촉기간 이전 접촉(제40조)			
	다. 접촉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또는 접촉 횟수 초과하여 접촉(제41조)			
	라. 접촉 제안사항 위배(제42조)			
	마. 입시 전 평가(제43조)			
	바. 입학 전 합숙·훈련 참가(제44조)			
5. 입학전형 규정 위배	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준수사항 위배(제48조)	제재금 1,000만 원 이하	제재금 1,000만 원 이하	
	나. 실기시험 준수사항 위배(제49조)			
	다. 면접시험 준수사항 위배(제50조)			
6. 학사관리 규정 위배	가.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 학업기준 관련 준수사항 위배(제54조)	제재금 1,000만 원 이하	제재금 1,000만 원 이하	
	나. 수강 관련 준수사항 위배(제56조)			
	다. 시험 성적 관련 준수사항 위배(제57조)			
7. 학생선수 재정지원 위배	학생선수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 위반(제60조)	출전정지 6월 이하	체육특기자 입학 선발 인원 제한	출전정지 6월 이하

구분	유형(위반행위)	대상 및 징계기준		
		학생선수	회원대학	경기지도자, 심판, 기타 개인
8. 대회·경기 참가 및 합숙·훈련 규정 위배	가. 대학이 참가를 제한한 대회·경기에 참가(제62조 1항 및 제63조 2항)	경고 또는 출전정지 3월 이하	제재금 1,000만 원 이하	경고 또는 출전정지 3월 이하
	나. 협의회가 참가중지 요청한 학기중 대회 참가(제62조 3항)			
	다. 방학 중 대회·경기 1회 초과 참가(제64조 1항)			
	라. 훈련 준수사항 위배(제65조)			
	마. 합숙 준수사항 위배(제66조)			
9. 실업·프로진출 관련 규정 위배	재학 중 실업·프로 진출 관련 준수 사항 위배(제67조)	출전정지 1월~3월	제재금 1,000만 원 이하	
10.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가. 물리적 폭력 행위	경고 또는 출전정지 6월~2년 (관중, 응원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기장 출입금지)		
	나. 폭언, 모욕 등 언어적 폭력행위	경고 또는 출전정지 3월~1년 (관중, 응원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기장 출입금지)		
	다. 과도한 판정 항의			
	라. 시설 및 기물 파괴	경고 또는 출전정지 3월~6월 (관중, 응원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기장 출입금지)		
	마. 대회규정 위반행위			
	바. 기타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경고 또는 출전정지 1월~3월 (관중, 응원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기장 출입금지)		

구분	유형(위반행위)	대상 및 징계기준		
		학생선수	회원대학	경기지도자, 심판, 기타 개인
11. 기타 비위 행위	가. 개인 비위·위법 행위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출전정지 6월~1년		출전정지 6월~1년
	나. 직무 또는 대학스포츠 관련 비위·위법 행위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출전정지 1년~3년		출전정지 1년~3년
12. 기타	가. 복수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징계 양정할 경우 (1) 각 위반행위의 징계가 동종(同種)일 때에는 가장 중한 징계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하되 각 징계에서 정한 장기 또는 다액 합산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각 위반행위의 징계가 이종(異種)일 때에는 병과한다. 나. 본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징계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상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다. 제재금을 기한 내 협의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상별위원회는 제재금보다 중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재금보다 중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기존의 제재금 납부 의무는 존속한다.			

3. 징계양정 인자⁸⁷⁾

구분		내용
감경적 요소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2. 수령 금액 또는 이득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성 및 개전의 정이 보이는 경우 2. 동종의 징계 전력이 없는 경우 3. 자신 신고하거나 자인한 경우 4.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
가중적 요소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 모의하거나 계획한 경우 2. 주도하였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3. 수령 금액 또는 이득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징계위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경우 5. 기타 부정적 요소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성 및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2. 2회 이상 동종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3. 징계위반 사실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도한 경우 4. 기타 부정적 요소

• 85 •

87) '2. 유형별 징계기준'의 '대상 및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 범위의 중간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한 범위의 징계를, 가중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중한 범위의 징계를 정한다. 감경적 요소와 가중적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반 요소 및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한 징계를 정한다.

스포츠윤리·아마추어리즘 준수 서약서

서약인	성명 : (한글)	(한문)
	소속 : (대학)	(학부/학과)
	생년월일 및 학번:(생년월일)	(학번)
	주소(거주) :	
	운동종목 및 등록단체 :	

1. 본인은 대학 학생선수로서 대학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대학 학칙·규정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제 규정이 정한 학사관리 및 스포츠윤리·아마추어리즘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가. 대학 학칙과 규정이 정하는 학사관리 사항을 준수하며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운영규정과 운영세칙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 및 학생선수에게 부과된 사항을 준수한다.
2. 만약 오늘 이후에 본인이 위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학 학칙·규정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규정이 정한 징계 등의 제재를 포함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 대학(장) 귀하

스포츠윤리 및 아마추어리즘 준수 서약서

서약인	성명 : (한글)	(한문)
	소속 : (대학)	(직책)
	생년월일(사번) :(생년월일)	(사번)
	주소(거주) :	
	운동종목 및 등록단체 :	

- 본인은 대학 운동부 경기지도자로서 대학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대학 학칙·규정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제 규정이 정한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 및 스포츠윤리·아마추어리즘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대학 학칙과 규정이 정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사관리 사항을 준수하며 경기 지도자로서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운영규정과 운영세칙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스포츠윤리와 아마추어리즘 및 경기지도자에게 부과된 사항을 준수한다.
- 만약 오늘 이후에 본인이 위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학 학칙·규정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규정이 정한 징계 등의 제재를 포함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인)

○○

대학(장) 귀하

확인 및 동의서

제출인	성명 : (한글)	(한문)
	소속 : (대학)	(학부/학과)
	생년월일 및 학번:(생년월일)	(학번)
	주소(거주) :	
	운동종목 및 등록단체 :	

- 본인은 대학 학생선수로서 대학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대학 학칙·규정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제 규정이 정한 학사관리의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을 확인하며 동의한다.
 - 협의회 규정에 따라 학점 및 학사관리 결과에 따른 대회 출전 제한 등 선수활동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본인에 관한 입학 및 학사에 관련한 정보를 협의회에 제출할 것을 본인에게 직접 또는 대학에 요청하는 경우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열람에 동의한다.
- 만약 오늘 이후에 본인이 위 확인 및 동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학 학칙·규정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규정이 정한 징계 등의 제재를 포함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대학(장) 귀하

[별지 제3호의 서식]

분쟁조정(중재) 합의서

아래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조정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는 신청 및 소송 등 법원에 대한 일체의 제소를 하지 않기로 합
의한다.

분쟁내용 요지: (예: 계약(주문)번호xxx에 관련한 모든 분쟁)

년 월 일

성명: _____

성명: _____

대표자: _____

대표자: _____

주소: _____

주소: _____

위대리인: _____

위대리인: _____

(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귀중